

**농림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 립 부





農 政 指 標

돌아오는 農漁村建設

· 경쟁하는 農林漁業

· 세계적인 農水産物

· 협동하는 農漁民

· 활력있는 農山漁村

여 백

**농림업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농림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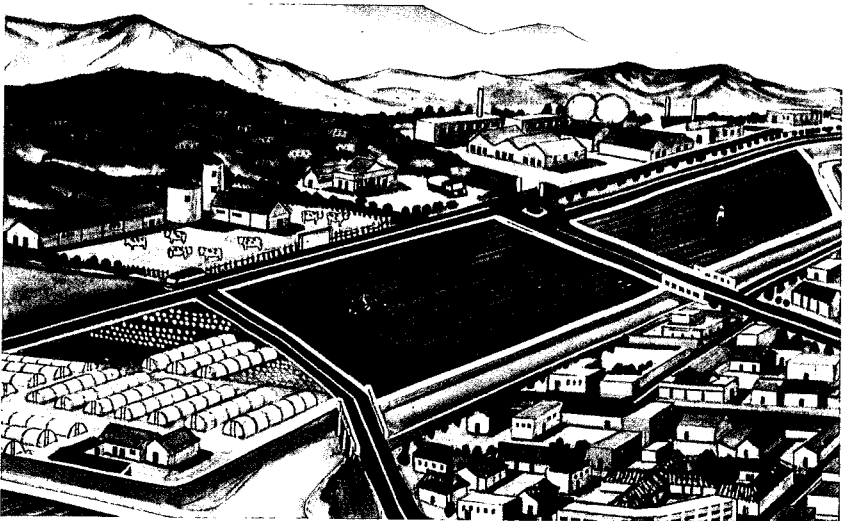
- 농림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2,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 산업
-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하는 식품산업
-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생명산업

농촌은

- 도·농의 지역구분을 초월한 다양한 산업공간 및 주민의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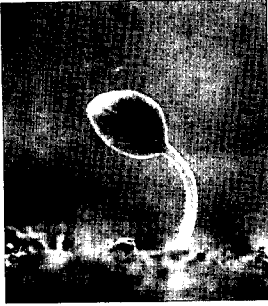
농민은

- 규모화, 전문화로 경영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첨단기술 정보를 활용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성장



차

례



- I. 농림부 연혁
- .
- .
- II. 조직과 기능
- 1. 기구
- 2. 기능
- 3. 정원
- .
- III. 주요농정시책의 변천
- .
- .
- IV. 주요농정관련지표
- .
- .
- V. 주요업무추진현황

부 록

- ○ 농림부 과별 직제
- ○ 외청 및 단체 기구표
- ○ 기관별 전화번호
- ○ 농업통상 관련 용어

I . 농림부 연혁

- 1948. 11. 4 : 농림부 신설
- 1962. 3. 29 : 농촌진흥청 신설
- 1966. 2. 28 : 수산청 신설
- 1966. 12. 27 : 산림청 신설

- 1973. 3. 28 : 농수산부로 개편
- 1973. 3. 3 :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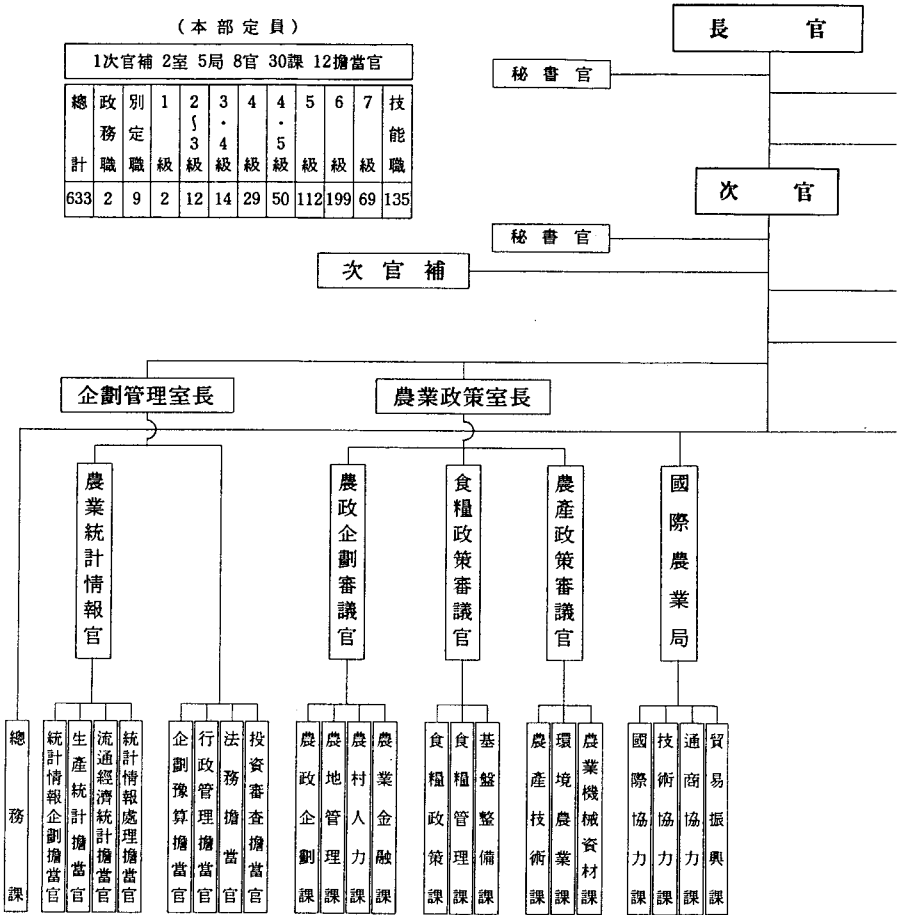
- 1987. 1. 1 : 농림수산부로 개편
- 1986. 12. 20 :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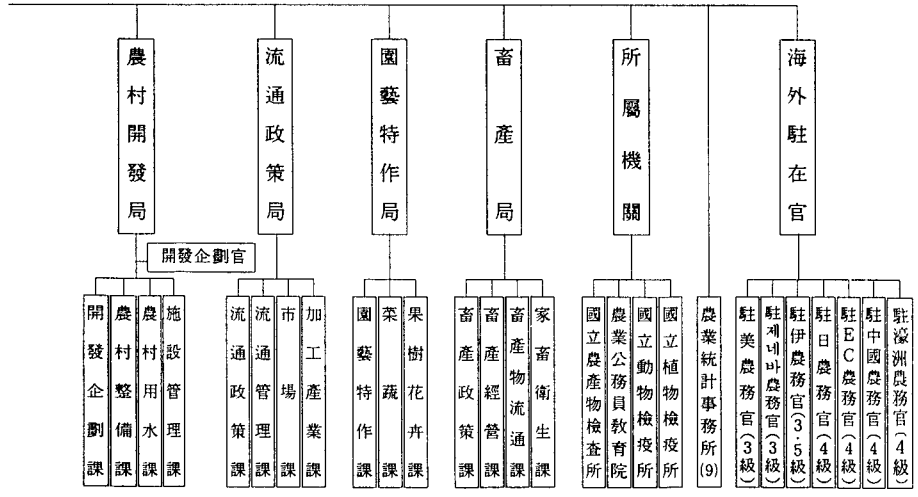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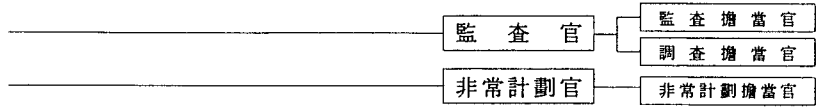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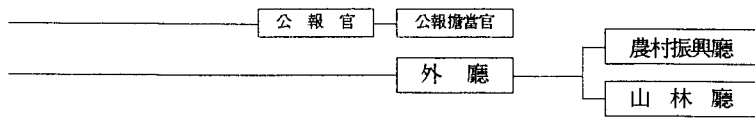
- 1996. 8. 8 : 농림부 개편
-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수산청 폐지

Ⅱ . 조직과 기능



1. 機 構





2. 機 能

가. 本 部

실 국 별	주 요 업 무
공 보 관	농림시책홍보
감 사 관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비 상 계 획 관	비상대비계획수립
총 무 과	공무원 임용·보안·국유재산관리·자금운용·서무업무
기 획 관 리 실	농업정책 및 예산의 종합조정, 법무, 통계조사
농 업 정 책 실	농정기획, 식량, 농산 및 농촌개발
· 농정기획심의관	중장기정책 개발, 농지관리, 농촌인력육성, 농업금융
· 식량정책심의관	식량수급관리, 식량생산기반조성
· 농산정책심의관	식량생산, 농업기술, 환경농업, 농업기계 및 자재수급
· 농촌개발국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관리
차 관 보	국제농업, 유통, 원예특작 및 축산정책
· 국제농업국	농림업부문 통상협력총괄, 수출입정책의 종합조정
· 유통정책국	유통구조개선, 농산물가격안정대책, 가공산업육성
· 원예특작국	채소·특용·과수·화훼작물 수급대책
· 축산국	축산기반조성, 가축증식, 축산물·사료수급, 가축위생

나. 所屬機關

기 관 별	주 요 업 무
국립농산물검사소	농산물검사, 농산물 품질관리
농업공무원교육원	농업분야 공무원 교육·훈련
국립동물검역소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검역
국립식물검역소	수출입 식물의 검역
농업통계사무소	농업통계조사, 농수산물유통정보조사

3. 定 員

(단위 : 명)

	총 계	정무직	별정직	일 반 직								기능직
				계	1급	2·3급	3·4급	4급	4·5급	5급	6-9급	
본 부	633	2	9	487	2	12	14	29	50	112	268	135
농 산 물 검 사 소	1,532			1,244	1		1	14	1	111	1,116	288
농업공무 원교육원	62			35		2		5		10	18	27
동 검 역 물 소	241			183		1		7	2	16	157	58
식 검 역 물 소	299			250		1		8	1	20	220	49
농수산통 계사무소	1,912		449	1,220						9	1,211	243
소 계	4,046		449	2,932	1	4	1	34	4	166	2,722	665
총 계	4,679	2	458	3,419	3	16	15	63	54	278	2,990	800

여 백

Ⅲ. 주요 농정시책의 변천



1. 건국 이후 격동기의 농정(1948~1960)

해방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국정현안이던 정치·사회의 조속한 안정과 급격히 늘어난 인구 부양을 위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개혁을 통한 자작농 창설과 농업증산계획 및 잉여농산물 도입 등의 적극적 추진

- 농지개혁 실시, 자작농 창설, 농민만 농지취득 허용(1949)
- 양곡관리법 제정 : 배급제 등 양곡부분 통제(1950)
- 임시토지소득세법 제정 : 토지수익 현물(양곡)납부(1951)
- 제1차 농업증산계획 (2차증산계획 : '58년)(1953)
- 한·미간 잉여농산물 도입협정 체결('56년부터 도입)(1955)
- 미곡담보유자 실시 : 최초 미가 유지제도(1957)

2. 산업성장기의 농정(1961~1976)

농지개발 및 농업생산기반 투자확대와 통일벼 보급 등 증산 노력의 결과, 70년대후반에는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는 한편,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새마을운동, 고미가정책 등 소득증대시책에 힘입어 도·농 소득균형을 이룸

- 고리채 정리, 종합농협발족, 농산물가격유지법 제정(1961)
- 제3차 농업증산계획 수립, 농촌진흥청 설립(1962)
- 축산법 제정(1963)
- 식량증산 7개년계획 수립(1965)
- 농업기본법 제정, 농업정책심의회 설치(1967)
- 제1차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실시
- 고미가정책 실시(이중맥가제 병행)(1969)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농지개발사업 본격 시행(1970)
-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 수립:농업기계화 강력 추진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농지보전시책 강화 제2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착수(1972)
- 절대농지 지정, 통일계 다수확품종 본격 보급(1973)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정:농지개간 장려(1975)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정(1976)

3. 전환기의 농정(1977~1988)

70년대 주곡자급기반 구축 이후 농정은 농업소득원의 다각화와 80년대 경제성장을 기초로 식량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농산물수입 확대 및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농외소득원개발에 역점을 두어 정책 전개

- 쌀, 보리 자급달성(쌀4,170만석 생산), 녹색혁명 성취(1977)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정:농기계보급 촉진(1978)
- 농지임대차, 위탁경영 허용을 법률에 위임(개정헌법)(1980)
- 농어민후계자 육성 착수, 사상최대의 쌀수입(225만톤)(1981)
- 복합영농시범 사업 추진(1982)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농외소득 시책 강화(1983)
- 양특적자 재정보전 최초 실시, 소값파동발생
축산업등록제·허가제 도입(축산법 개정)(1984)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농지임대차 합법화(1986)
- 농어가부담경감대책:고리사채 제도금융으로 대체(1987)
- 추곡수매가 결정 국회동의제, 조합장직선제 도입
농지투기억제대책 강화:비농민 농지취득 엄격 제한(1988)

4. 국제 화시대의 농정(1989~)

개방화·국제화라는 세계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21세기 농정의 기본틀로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특별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복지증진사책 본격추진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농업진흥지역제도 도입 결정(1989)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1990)
- 농어촌구조개선대책, 42조 투융자계획(1992~2001) 수립(199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설치, 농지·산지전용 부담금신설
- 농업진흥지역 지정(절대농지 폐지), 통일계 수매중단(1992)
- 신농정5개년 추진계획(42조 투자계획 3년 앞당김)(1993)
 - 양정개혁방안 마련, 농지소유상한확대(3→10ha)
 - UR협상타결 : 쌀 수입개방 10년간 유보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마련, 농특세 신설(1994)
 - 농지법, 농안법, 농협법 등 28개 법률 제·개정
- 농어민연금제 실시, 농어촌학생 특례입학제 실시 결정(1995)

여 백

IV. 주요농정관련지표



1. 농가인구 및 호수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농 가 인 구	천명	14,422	10,827	6,661	5,167	4,838
(총 인 구 대 비)	(%)	(44.7)	(28.4)	(15.6)	(11.6)	(10.8)
농 가 호 수	천호	2,483	2,155	1,767	1,558	1,499
○ 전 업	"	1,681	1,642	1,052	931	853
○ 겸 업	"	802	513	715	627	646
- 1 종 겸 업	"	488	295	389	237	282
- 2 종 겸 업	"	314	218	326	390	364
농 가 호 당 인 구	명	5.81	5.02	3.77	3.32	3.23
경 제 활 동 인 구						
○ 농 림 수 산 업	천명	4,846	4,654	3,292	2,699	2,541
- 농 림 업	"	4,756	4,429	3,152	2,586	2,424
- 수 산 업	"	90	225	140	113	117

※ '95 농가인구 및 농가수는 '95농업총조사 결과 잠정치임

2. 농림어업 부가가치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국 민 총 생 산	경상10억원	2,788.4	36,857.0	178,262.1	303,772.6	348,284.3
○ 농 림 어 업	"	738	5,612	15,592.4	21,498.3	23,068.5
부 가 가 치						
(전년대비성장률)	%	(Δ 1.4)	(Δ 19.4)	(Δ 4.6)	(1.2)	(2.8)
- 농 업	경상10억원	646	4,773	13,262	18,248	19,678
- 임 업	"	48	373	648	824	904
- 어 업	"	44	466	1,683	2,482	2,487

3. 농가경제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 농 가 소 득	천원	256	2,693	11,026	20,316	21,803
- 도시근로자	"	338	2,809	11,320	20,416	22,933
(도·농간소득비교)	농/도(%)	(75.5)	(95.9)	(97.4)	(99.5)	(95.1)
○ 농 업 소 득	천원	194	1,755	6,264	10,325	10,469
- 쌀 소 득	"	88	741	3,097	4,048	3,984
(쌀소득비율)	%	(45.4)	(42.2)	(49.4)	(39.2)	(38.1)
○ 농 외 소 득	천원	62	938	2,841	6,184	
- 농외소득률	%	24.2	34.8	25.8	30.5	
(일 분)	"	(63.4)	(78.9)	(82.4)	(77.5)	
(대 만)	"	(51.3)	(70.4)	(64.8)		
○ 농 가 자 산	천원	915	13,384	79,352	141,901	158,171
○ 농 가 부 채	"	16	338	4,734	7,885	9,163
(생산성부채)	(%)	(45.8)	(56.6)	(66.5)	(78.5)	(80.0)

4. 자금지원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 국 가 전 체 예 산	억원	4,413	65,755	283,520	506,553	594,011
○ 농림수산부문예산	"	438	3,962	27,352	71,563	94,448
(전체 예산대비)	%	(9.9)	(6.0)	(9.6)	(14.1)	(16.2)
- 농림수산부소관	억원	316	3,002	23,674	63,969	81,594
· 일 반 회 계	"	316	2,620	10,066	14,980	20,578
· 특 별 회 계	"	-	382	13,608	48,989	61,016
○ 기 금 운 영 규 모	억원	1,074	14,706	56,694	79,351	81,256
- 양곡증권정리기금	"	827	13,634	46,052	60,390	57,232
- 농수산물가격안정	"	219	990	5,950	11,950	14,800
기 금						
- 종 자 기 금	"	18	40	219	427	457
- 농 지 관 리 기 금	"			4,206	6,375	8,800
- 농업산학협동기금	"	5	15	8	9	7
- 산림개발기금	"	5	27	259	200	230

5. 생산기반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 경 지 면 적 (논)	천ha (천ha)	2,298 (1,273)	2,196 (1,307)	2,109 (1,345)	2,033 (1,267)	1,985 (1,206)
○ 호 당 경 지 면 적	ha	0.93	1.02	1.19	1.30	1.32
○ 경지규모농가호수						
- 0.1ha 미 만	천호	26	14	15	11	16
- 0.1 ~ 0.5	"	761	598	468	443	417
- 0.5 ~ 1.0	"	824	748	544	448	432
- 1.0 ~ 2.0	"	639	629	543	442	418
- 2.0 ~ 3.0	"	124	112	129	124	123
- 3.0ha 이 상	"	37	36	44	65	70
○ 경 지 이 용 률	%	151.3	125.3	113.3	107.3	108.1
○ 경 지 정 리 면 적 (경 지 정 리 율)	천ha (%)	144 (11)	369 (28)	577 (43)	661 (51)	690 (54)
○ 수 리 답 면 적 (수 리 답 비 율)	천ha (%)	745 (58)	893 (68)	987 (73)	941 (74)	906 (75)
○ 농 지 전 용 면 적	천ha	-	1.0	10.6	12.0	16.3
○ 휴 경 농 지 면 적	"	-	-	40.4	62.5	64.6

※ 농지전용면적은 농지전용허가(협의, 동의, 승인)면적임

6. 농수산물 생산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 미 곡	천M/T	3,993	3,550	5,606	5,060	4,695
- 식부면적 (단 수)	천ha (kg/10a)	1,203 (330)	1,233 (289)	1,244 (451)	1,103 (459)	1,056 (445)
○ 맥 류	천M/T	1,820	906	417	234	292
○ 두 류	"	271	266	217	178	189
○ 서 류	"	783	431	208	174	213
○ 채 소	"	2,653	7,676	8,677	9,222	10,586
○ 과 실	"	423	833	1,766	1,930	2,300
○ 육 류	"	165	423	773	1,075	1,061
- 쇠 고 기	"	37	93	95	147	155
○ 우 유	"	48	452	1,752	1,917	2,014
○ 수 산 물	"	935	2,410	3,275	3,477	3,348

7. 농작업 기계화율(벼)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 경운, 경지	%	-	('86)70	84	96	97
○ 이 양	"	-	28	78	93	97
○ 방 제	"	-	79	93	94	97
○ 수 화	"	-	27	72	91	95
○ 건 조	"	-	3	15	26	32
축산사육 (사육두수)						
○ 소	천두	1,310	1,634	2,126	2,945	3,147
- 환 우	"	1,286	1,361	1,622	2,393	2,594
- 육 우	"	24	180	504	552	553
○ 돼 지	"	1,126	1,784	4,528	5,955	6,461
○ 닭	천수	23,633	40,130	74,463	80,569	85,800
축산사육 (사육호수)						
○ 소	천호	1,123	966	653	566	543
- 환 우	"	1,120	948	620	540	519
- 육 우	"	3	18	33	26	24
○ 돼 지	"	884	503	133	54	46
○ 닭	"	1,338	692	161	189	203

8. 식량(쌀)수급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 공	급	천M/T	4,719	6,468	7,470	6,570	6,267
- 전 년 이	급	"	88	752	1,572	1,820	1,156
- 생 산	"	"	4,090	5,136	5,898	4,750	5,060
- 수 입	"	"	541	580	-	-	51
○ 수	요	천M/T	4,394	5,402	5,445	5,414	5,257
- 식 량	용	"	4,218	5,057	5,127	4,814	4,741
- 가 공	용	"	16	36	80	351	278
- 종 자	용	"	37	45	45	40	39
- 감 모	등	"	123	264	193	209	199
○ 차 년 이	월	"	325	1,066	2,205	1,156	1,010
○ 1 인 당 소 비	량	kg	136.4	132.4	119.6	108.3	105.7
○ 차 급	도	%	93.1	93.1	108.3	87.8	91.4

9. 쌀 수매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 생 산 량	천석	27,356	24,655	38,932	35,134	32,601
○ 수 매 가 격 (2등급기준)	원/80kg	5,150	36,600	95,020	126,700	126,700
○ 수 매 량 (수매비율)	천석 %	2,436 8.9	3,790 15.4	8,357 21.5	10,500 29.8	9,600 29.4

10. 축산물 수급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육 류 전 체)	천M/T					
○ 수 요	"	165	433	860	1,160	1,218
○ 공 급	"	165	433	860	1,160	1,218
- 생 산	"	165	423	773	1,015	1,061
- 수 입	"	-	10	87	145	188
○ 1인 당 소비	kg	5.2	11.3	19.9	25.8	27.4
○ 자 급 륜	%	100.0	97.8	90.0	87.5	84.6
(쇠 고 기)						
○ 수 요	천M/T	37.3	100.0	180.6	269.8	301.2
○ 공 급	"	37.3	100.0	180.6	273.9	301.2
- 생 산	"	37.3	93.1	94.8	147.3	154.7
- 수 입	"	-	6.9	85.8	126.6	146.5
○ 1인 당 소비	kg	1.2	2.6	4.1	6.1	6.7
○ 자 급 륜	%	100.0	93.1	52.5	54.6	51.4
(우 유)						
○ 수 요	천M/T	50	412	1,879	2,078	2,144
○ 공 급	"	48	474	1,902	2,094	2,210
- 생 산	"	48	452	1,752	1,917	2,014
- 수 입	"	-	-	-	131	196
○ 차 년 이 월	"	-	62	23	15	66
○ 1인 당 소비	%	1.6	10.8	42.8	46.8	47.8

11. 식량자급도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 사 료 용 제 외	%	86.1	69.6	70.3	52.8	55.7
○ 사 료 용 포 합	"	80.5	56.0	43.1	27.7	29.1

12. 국제 곡물가격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연 평균 가격)			('82)			
○ 미 곡	\$/MT	-	278.60	335.03	499.38	417.95
○ 소 맥	"	-	157.76	130.87	146.16	174.29
○ 옥 수 수	"	-	110.15	109.18	106.44	119.40
○ 대 맥	"	-	126.31	120.77	114.57	139.15
○ 대 두	"	-	232.61	227.75	240.27	235.21

13. 농림수산물 수출입

구 분	단 위	'70	'80	'90	'94	'95
○ 수 출	백만\$	218	1,930	2,920	3,049	3,469
- 농 축 산 물	"	25	541	795	952	1,242
- 임 산 물	"	110	629	610	511	505
- 수 산 물	"	83	760	1,515	1,586	1,722
○ 수 입	백만\$	469	3,164	5,789	8,716	10,520
- 농 축 산 물	"	341	2,215	3,754	5,426	6,899
- 임 산 물	"	128	912	1,665	2,563	2,778
- 수 산 물	"	0.4	37	370	727	843
○ 수 지	"	△251	△1,234	△2,869	△5,667	△7,051

여 백

V. 주요업무 추진현황



農政基本方向

농어업 競爭力 강화와 構造改善에 박차를 가하고 농어민이 공감하는 現場中心의 農政改革을 추진

- 불안한 世界食糧 사정과 통일시대에 대비, 우리 주곡인 쌀 자급기반을 확충
- 세계와 競爭할 수 있도록 農漁民의 對應力量 배양
- 技術 및 輸出 농어업의 活路를 본격적으로 개척
- 농수산물의 需給 및 價格安定政策을 확충
-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 추진
- 農漁村 활력 증진을 위해 生活環境 개선과 농어민 福祉增進 施策을 확충

1. 쌀 産業發展 綜合對策 推進

가. 推進背景

■ 對內與件

- 생산량이 3,700~3,800만석에서 최근 3,300만석 수준으로 감소
 - ※ 재배면적의 감소(91~95 연평균 38천ha), 생산단수의 정체(91~95 연평균 451kg/10a)
- 소비는 최근 3,500만석 수준에서 감소폭 둔화
- 재고는 93년 1,300만석에서 금년에는 278만석으로 감소 전망
- 현재 추세를 방치시 연간 200~300만석정도 부족할 전망

■ 對外與件

- 국제 곡물재고가 사상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제 쌀 가격도 큰폭으로 상승
 - 국제곡물 재고:(95) 321백만톤 → (96) 251백만톤(△22.0%)
 - 쌀 국제가격:(95.6) \$367/톤 → (96.6) \$474/톤(29.2%증)

최근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과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 우리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이 긴요

나. 基本方向

- WTO체제하에서 의무수입물량(1~4%)을 제외하고는 쌀 자급을 유지하기 위해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 ①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
 - ②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 ③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보장장치의 확립에 중점

다. 主要 推進施策

(1) 벼 栽培面積 確保

- 2004년까지 논 면적 110만ha, 벼 재배면적을 92만ha유지
 - 체계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전용 억제
 - 기반정비된 우량농지 전용시에는 농지조성비에 경지정리, 용수개발등 기투자 비용을 추가 부과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 농업경영자금을 특별지원
 - 수매량 우선 배정, 토양개량지원 확대, 직접지불제 우선 시행 등
 - 개발중인 간척지는 조기영농이 가능토록 개답위주로 투자확대
-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
 - 산지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활용한 환경친화적 개발 지도
 - 도로변 1km이내 산지 전용제한 폐지, 각종 부담금 면제 추진 등

(2) 生産性 向上과 生産費 節減

- 고품질 다수확 품종개발을 통하여 단위당 생산량을 480kg/10a 이상으로 증대
 - 우량품종재배면적 확대 : ('95) 30 → (2000) 80%
- 2000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 400개소를 쌀 주산지에 설치
 - 전체 쌀 생산량의 36%, 유통량의 42% 처리가능

- 생산기반정비와 기계화를 통하여 생산비를 2004년까지 35% 절감

(3) 生産意慾 鼓吹를 위한 約定收買制 施行

- 쌀 수매제도를 전면 개편, 사전예시와 함께 가격을 보장하는 약정 수매제를 97년부터 시행
 - 년초에 수매량과 가격을 예시한 다음 봄철에 농가와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일정수준을 선도자금으로 지급
 - 약정농가는 수확기에 농가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약정가대로 정부수매에 응하거나 시장에 출하하고,
 - 시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선도자금에 일정금리를 더하여 반환
 - ※ 96 정기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97 약정 가격과 물량을 예산심의와 연계, 국회동의
 - 약정가격에 의한 정부수매물량이 부족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량을 시가로 수매

〈 약정수매제의 효과 〉

- ① 년초에 수매 물량과 가격을 사전예시, 안정적 계획영농 유도
- ② 현재 수매가격 이상의 하한가격 보장으로 소득증대 도모
- ③ 영농기 선도자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소득지원 효과 거양
- ④ 수확기에 자율 선택권을 부여, 민간유통 활성화와 자율영농 정착 유도

- 쌀값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 범위내에서 관리해 나가되, 계절진폭을 15%까지 확대

(4) 쌀 生産農家의 所得支援을 위한 直接支拂制度 施行

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이양을 통한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새로운 直接支拂制度를 97년부터 시행

■ 目 的

- 은퇴시기가 가까워진 고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전업농에게 규모확대기회를 부여, 영농규모화를 촉진

■ 主要内容

- 고령 쌀 농가가 전문경영체에게 농지를 장기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소득보조금 지급
 -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 얻는 소득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급
- 규모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 농어촌발전대책 추진으로 농어민연금보조, 농어가자녀 학자금 지원 등 간접적 부담경감 성격의 지원시책(96년예산기준 총 1조 4천억원)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소득지원적 성격의 직접지불제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어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2. 先進農漁業을 主導할 專門經營體 育成

농림어업 경영체에 대한 成長段階別 支援體系를 확립, 건실한 중소기업 수준으로 육성

■ 농림어업 專門經營體의 체계적 육성

- 자영농고, 농업전문학교 등 농과계 졸업생을 후계 경영인력으로 우선 선정하여 전문경영체로 발전 유도
 - 농어민후계자는 경영인력 확보 차원에서 매년 1만명 수준 육성
 - (95까지) 88,394명, 10,465억원 → (96계획) 9,010명, 2,000억원
-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농을 2004년까지 12만호 육성
 - 쌀 6만호(5~20ha), 축산 3만호, 과수·화훼 등 3만호
 - (96계획) : 15천호 (쌀10, 축산3, 과수·화훼 등 2천호)
- 경영의 규모화와 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한 法人經營體 육성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소유허용(주식회사는 제외)으로 대 규모 경영여건을 마련
 - 법인경영체의 건실한 운영을 적극 유도
 - 정책사업 대상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능력있는 법인을 선별 지원하고 경영 및 기술지도를 강화
 - ※ 법인경영체 설립현황 (95말현재) : 농업회사법인 1,179, 영농조합법인 2,455개소

■ **농림어업 전문경영체의 사후관리강화**

- 경영실적이 우수한 전문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기업 경영자금을 새로 지원
 - 96 농기업경영자금 : 1,000억원 (연리 5%)
 - 경영규모확대,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 품목별로 선진경영모델을 설정, 목표관리방식(Bench marking)에 의한 경영지도 및 상담을 체계화
 - 농촌지도소의 경영상담기능을 강화하고 마케팅, 회계 등 경영기법을 보급

■ **전문경영체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農林水産系 學校 教育의 활성화**

- 농고는 도별로 1개교씩 9개교, 수산고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3개교를 자영자 양성학교로 육성
 - 96 지원계획 : 138억원
-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전문학교 설립
 - 재학생 교육비 국고지원 및 전원 기숙사생활
 - ※ 96년 설립, 97년부터 개교 (학생 240명 선발)
 - 졸업자는 농어민후계자로 우선 선정
- 도별로 1~2개의 농림수산계 대학(총 16개교)을 특성화대학으로 선정, 지역 농어업개발의 중심체로 육성
 - 현장애로 및 첨단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 (96부터 5개년간 총 700억원 지원)

3. 農業生産基盤 정비 및 機械化 促進

農業振興地域을 중심으로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을 종합정비하고 機械化 營農體系를 구축, 생산비 절감

가. 農業生産基盤 정비

- 농업진흥지역내의 논(735천ha)에 대한 경지정리를 98년까지 완료
 - 경지정리 : (95) 24 → (96) 25천ha
-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행
 - 76년 이전 경지정리된 지역중 집단화된 평야지 20만ha를 2004년까지 대구획으로 재정리하여 쌀 전문생산단지로 탈바꿈
 - 대구획 경지재정리 : (95) 5 → (96) 20천ha
 - 주요 간선농로 12천km를 2004년까지 포장하여 대형농기계 영농기반을 조성
 - 기계화 경작로 : (95) 200 → (96) 1,308km
-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農漁村用水 10個年 計劃 수립·추진 (1995~2004)
 - 농업진흥지역내 용수개발을 2004년까지 완료(신규 96천ha)
 - 농어촌용수개발 : (95) 6 → (96) 6천ha
 - 내한 능력이 부족한 지역 150천ha에 보충용수개발
 - (96계획) : 7.6천ha (1.4천ha 준공예정)
 - 지표수개발이 힘든 가뭄상습지역에 암반관정 개발 (30천ha)
 - (95) 3,101 → (96) 1,101개공

나. 農業機械化의 촉진

■ 中·大型 農機械보급 촉진으로 生産費를 절감

- 96년 농기계 보급계획 : 총228천대 (보조 198천대, 용자 30천대)
 -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는 일반농가 중심으로 농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구입비의 50% 보조
 - 대형농기계는 농업회사법인 및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쌀전업농 중심으로 기준사업비의 50% 보조
 - 96지원계획 : 농업회사법인 218개소(89억원), 공동이용조직 1,100개소(271억원)
- 농기계 보조지원 공급에서 탈락된 농가 및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의 농기계 구입시 저리용자 지원
 - 농기계가격의 65~90%를 연리 5%(1년거치 5~7년 상환)로 용자

■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강화

- 농기계 수리용 부품확보 및 수리시설 설치자금 지원
 - 농기계 수리용부품 및 장비지원 : (95) 260 → (96) 167억원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신규지원 : (96) 4개소, 32억원
-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병역특례 혜택
 - 산업기능요원 편입 : (94~95) 395 → (96) 238명
- 농기계순회 사후봉사 실시
 - 시·군 농촌지도소(161개)에서 수시로 마을단위 순회 수리봉사
 - 농기계 전국순회 수리봉사실시 : 연 2회 (3~4월, 8~9월)

4. 園藝産業 및 畜産業의 競爭力 提高

園藝産業

■ 첨단유통시설을 갖춘 生産·流通團地 조성 확대

- 과수, 시설채소, 화훼 등 품목별 주산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 지원
 - 과수 생산·유통지원 : (95) 120 → (96) 150개소
 -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 50 → 50
 -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 : 20 → 20
 -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 10 → 10
 - 화훼 생산·유통지원 : 15 → 20

■ 尖端施設을 갖춘 유리溫室 설치 확대로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 촉진

- 유리온실 : (95까지) 138 → (96까지) 232 → (2004까지) 1,150ha
- 유리온실의 표준 설계도 보급, 시설자재 국산화 및 설치비용절감
 - 유리온실 설치비용 : (96) 40 → (98) 35만원/평

■ 尖端技術 개발·보급으로 勞動力 節減 및 品質向上

- 양액재배 등 첨단기술과 현장애로 기술개발지원 : (96 : 62건, 19억원)
 - 색깔, 맛 등이 우수한 품종 집중개발, 수요 고급화에 부응
- 품목별 특성에 따라 파종·방제·수확 등 전작업의 기계화 추진
 - 규격묘 생산, 정식기 등 개발·보급으로 자동화 촉진

畜産業

가. 축산업 生産性 향상을 위한 專業化, 團地化, 系列化 추진

- 부업농 생산구조를 규모화된 專業 養畜農家 구조로 전환
 - 2004년까지 전업 양축농가 30천호를 육성
 - 96계획 : 3천호(한우우 1.5, 젓소 0.6, 돼지·닭 0.9천호)
 - 축사시설 현대화, 초지조성, 급이·급수시설 자동화등 종합 지원
 - (95) 3,522 → (96) 4,049억원
 - 축종별(96) : 한우 675, 젓소 940, 돼지 1,669, 닭 765억원

- 畜産團地를 조성, 생산비 절감 및 분뇨처리의 효율성 제고
 - 진입로 개설, 용수개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종합지원
 - 축산단지 조성 : (95)47개소, 649억원→(96)72개소, 614억원
 - 환경보전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확대
 - (95) 10,681개소, 1,095억원 → (96) 9,696개소, 1,182억원

- 專門 經營體를 중심으로 한 生産·加工·流通 系列化 지원
 - 계열화에 필요한 기자재 생산, 축산물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
 - 계열화지원 : (95) 8개소, 202억원 → (96) 3개소, 196억원

나. 家畜改良 사업확대

- 소 電算化事業 추진, 전두수 개량사업 확대
 - 소의 수급관리, 질병관리 과학화 및 송아지 생산안정 기반구축
 - 예산지원 : (95) 139 → (96) 120억원
-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쌍자 생산, 송아지 생산비 절감
 - 도 종축장을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계하여 수정란 생산 및 이식센타로 육성 (96 신규지원 : 48억원)
- 專門종돈업체를 육성, 능력이 우수하고 질병감염이 적은 종돈 공급
 - 2000년까지 8개그룹 육성계획, 96년 3개그룹 선정·지원

다. 축산물 流通構造 개선

- 畜産物 綜合處理場 건설, 冷藏流通體系로 전환
 - 건설완료 : 2개소(축협, 한냉), 96추진 : 5개소(123억원)
- 육류의 품질에 따른 差等價格 거래제 정착
 - 육류도체 등급제 실시 확대 (도축·도매단계)
 - (95)특별·광역시, 제주도→(96)전국 도축장 소재지역
 - 소매단계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추진
 - 96년은 계도 실시, 97.1부터 의무 시행
- 식육처리 專門 技術人力 양성 및 식육처리 기능사제도 도입
 - 식육처리기술훈련실시 : (95) 210 → (96) 180명
 - 96하반기 식육처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실시계획

5. 農林漁業 技術革新과 情報化 촉진

農漁村現場에서 겪고있는 기술적 애로 해결과 尖端技術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촉진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육성

가. 농림어업 技術革新

- 선진기술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2004년까지 1조7천 억원)
 - 기술개발의 목표관리제를 도입,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
 - 획기적인 종자갱신을 추진, 농업경쟁력 강화를 촉진
 - 백합종구, 채소종자 등 수입에 의존하는 우량종자의 년차별 국산화계획을 수립
 - 인공씨감자 증식기술 등을 농가실용기술로 보급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농작업의 로봇화 등 첨단기술 과제를 선정, 중점개발
- 地域特性化 研究 및 분야별 종합화(Package) 시스템 기술 개발
 - 지역의 품목별 연구소와 특성화 농과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특성화 연구 확대
 - 분야별 핵심, 응용 및 주변기술을 망라한 다단계 동시 연구실시로 기술개발효과를 극대화

■ 기술개발 추진체계 보강으로 기술개발·보급의 효율제고

- 농림수산물정책심의회 기능 강화, 기술개발 투자 효율화
- 농림수산물기술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제 공모,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개발성과 보급의 효율성 제고

나. 국내외 농림수산물정보 綜合提供, 농어가의 經營革新 촉진

■ 利用者 위주의 정보수집·보급

- 이용빈도가 높은 가격정보는 해외가격동향 수집·보급
 - 96년 계획 : 일본의 채소, 과일, 수산물 당일 산지·도매 가격과 대만의 청과물 가격 수집·보급
- 해외 현지정보망과 연결, 海外농업동향 제공
 -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네덜란드, 덴마크 등
- 기술, 경영, 유통에 관한 자료축적(데이터베이스) 확대
 - 데이터베이스 구축 : (95까지) 47 → (96까지) 90개

■ “農林水産 綜合情報網” 구축, 농림수산물정보 이용 촉진

- 농림수산물정보센터 중심, 정보 공동이용[※] 창구 일원
 - 농림수산물부, 농진청, 수산청 등 12개 농어업관련기관 연결

■ 情報利用促進을 위한 환경조성

- 농어업인의 情報通信 利用教育 확대
 - 정보통신 교육인원 : (95) 503 → (96) 1,500명
- 시연회, 세미나 개최 등으로 情報利用 雰囲気 확산

6. 농산물 輸出擴大 및 효율적 輸入管理

- 품목별 현장 수출애로요인 해소 및 수출지원 강화
-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수입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

농산물 수출확대 : 96년 수출목표 21억불(95년 17.5억불)

가. 품목별 수출진흥대책 수립·추진

- 품목별 수출목표 설정 및 관리
(예) 돼지고기 : (95) 90.4 → (96) 180백만불
- 수출 유망품목별 수출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
 - 상반기중 100대 애로사항을 발굴, 94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예) 김치 등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운송전용 컨테이너 지원
(’96: 10대, 44천만원)

나. 優秀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 및 수출지원 확대

- 품목별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 생산에서 포장, 저장, 운송, 상하역시설 등 종합수출 물류시스템 구축
- 수출업체 금융지원 확대
 - 농안기금으로 우수농산물 구매 지원 강화(1,000억원)
 - 중소 수출업체 수출설비 시설자금과 유통자금 신규지원
 - 시설자금 100억원 (5%), 운영자금 300억원 (5%)
 - 농수산물 수출보험 활성화
 - 보상비율 확대 (40→60%), 보험요율 인하 (2→1%)

■ 효율적인 農業貿易 情報蒐集 및 전파체계 구축

- 교역량, 가격동향, 소비자 반응 등 최신자료 수집 제공
 - 96계획 : 70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D/B구축완료
- 해외농업무역관의 정보수집, 수출알선, 홍보 등 지원기능 강화

■ 輸出支援專擔機構 육성 및 農水産物貿易振興센터 건립 추진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육성
 -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총괄지원기능 수행
 - 금융지원, 무역정보사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민간수출업체가 기피하는 초기단계의 개발수출업무 추진
-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 건립 추진 (2000년까지)
 - 국제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 농업관련 행사개최
 - 수출업체 및 해외 바이어에 대한 수출 종합지원기능 수행

다. 日本·동남아 등 수출유망지역에 대한 販促活動 強化

■ 東京 농업무역관 개장 및 김치, 인삼 등 상설홍보관 운영

- 경쟁력 있는 신선농축산물과 전통가공식품 등 중점 수출

■ 國際有名博覽會 및 特別企劃展 參加 적극 지원

- 수출업체의 박람회 참가 업무대행, 참가비 등 지원
 - 일본 FOOD EX JAPAN 등 15회 참가지원
 - (95) 15회, 108백만불 수출계약 → (96.9) 10회, 115백만불 수출계약

농산물 輸入管理制度의 효율적 운영

■ 競爭力提高와 연계한 輸入管理對策 추진

- 저율관세로 도입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국영무역, 수입권공매를 통해 국내수급사정에 따라 방출시기 조절
 - 판매이익금은 경쟁력제고에 재투자(95 이익금 : 약 5,135억원)
- WTO에 제시한 시장접근물량중 경쟁력향상을 위한 원자재와 국내 생산이 적은 가공산업 원료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 96 계획 : 종돈, 종계, 옥수수, 참깨, 전분류 등
- 농업용원자재는 할당관세제도를 활용, 생산비 절감 도모
 - 96하반기 : 사료용 옥수수(0%), 대두(1%), 농약원제(2%) 등

■ 關稅制度의 효과적 운영으로 國內農業 保護

- 특별긴급관세제도 운영(팥, 땅콩 등 61개 품목)
 - 급격한 수입증가나 수입가격 하락시 추가관세 부과로 국내농가보호
- 조정관세제도 운영 내실화로 저가농산물 수입증가에 대비('96 하반기 : 표고버섯, 메주, 무 등 11개 품목)

■ 2단계 動·植物 檢疫機能 강화대책 추진('96~'98)

- 검역·검사절차의 과학화·신속화·객관화로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병해충 유입을 방지
- 인력 및 장비 보강 추진
 - 검역인력 보강 : (96) 70명 증원
 - 검역시설·장비 등 확충 : (95) 106 → (96) 112억원

7. 農産物 需給 및 價格安定과 流通改善

효율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의 추진과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농가의 제값받기와 소득증대 노력을 적극 지원

가. 農産物 需給 및 價格安定 對策의 強化

- 농업관측의 電算化·內實化, 事前的 需給安定장치 보강
 - 재배의향과 출하동향을 전산화, 살아있는 농업관측 정보 제공으로 농민의 사전 생산·출하시기 조절을 유도
 - 전산화품목 : (95) 무, 배추, 시설택소 → (96) 고추, 마늘, 양파 추가
 - 관수시설, 반출도로 등 생산기반정비, 안정생산 도모
- 생산자단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격안정사업 검토
 - 주산단지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자의 조직화, 자조금 적립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생산·수급조절 유도
 - 일정수준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락시, 자조금으로 조직참여자에 안정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차액지급제 도입 검토
 - 생산조정, 공동규격출하 등을 약속하고 생산자조직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
- 過剩生産시 產地廢棄 및 時價收買 확대, 최소한의 가격선 유지
 - 과일생산으로 가격폭락시 시장가격이 최저 지지가격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과감한 산지 폐기 및 수매 실시

- 최저 지지가격 수준은 경영비, 시가, 재배추세 등을 감안하여 설정

나. 農産物 流通改善

■ 産地 및 消費地 流通施設의 지속적 확충

- 산지에서 선별·포장·가공하도록 하여 농민소득증대 및 수급조절기능 보강
 - 산지가공공장 : (95까지) 1,053 → (96계획) 202개소
 - 농산물포장센터 : 21 → 28
 - 간이집하장 : 1,954 → 1,046
 - 청과물종합처리장 : 3 → 3(계속)
- 소비자 유통시설의 조기건설과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유통비용절감
 - 공영도매시장 : (95까지) 13개소 → (96계획) 20(계속 14)
 - 공판장 : 51 → 6
 - 주문거래에 의한 집배송전문의 물류센터 건설(96 : 8개소)
 - 택배, 우편배달, 농민 장터 등 직거래 사업 활성화

■ 流通施設 운영의 效率化

- 농산물의 규격화·등급화를 촉진하여 공산품처럼 상품단위 유통이 가능하도록 기반조성
 - 포장재 지원, 공동규격출하 촉진자금 지원확대
 - (95) : 1,820 → (96) : 2,084억원
 - 산지 유통시설은 규격상품출하 생산자조직에 우선 지원
- 농림수산물 물류표준화로 유통효율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 포장상자, 시설·장비 등의 표준규격화로 상호 호환성 확보
- 물류용어, 상품코드 등 물류정보 표준화로 종합정보망 구축 기반 마련
- 유통시설별 운영편람 작성·보급 및 전문인력 확보 유도

8. 農産物의 安全性 및 品質向上

生産에서 出荷段階까지 安全性 檢査 및 品質管理 철저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

- 농산물검사소를 품질관리 종합기관으로 개편하고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기능을 대폭 강화
 - 안전성검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보강
 - 분석요원 : (95) 38 → (96) 62명
 - 첨단분석장비 확충 : (95) 197 → (96) 412대
 - 96.8부터 쌀, 배추, 딸기, 사과 등 20개 품목에 대해 우선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
 - 품목별로 check-point를 설정하여 중점검사와 생산지도를 강화
- 畜産物 衛生水準을 획기적으로 향상
 -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축사시설의 현대화·자동화로 위생수준을 제고
 -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한 단계별 목표 설정·추진
 - 쇠고기·닭고기에 대한 잔류물질규제검사 실시 (96.7월부터)

- 돼지고기는 금년 하반기 계도 검사후 97부터 규제검사 실시
- 우유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낙농제도를 개편
 - 우유 검사기준 강화, 축협 등 생산자단체로의 집유체제 일원화 등
 - 농장별로 주 2회이상 항생제의 스크린 검사 실시

■ 品質認證制度의 효율적 운영

- 관주도형 검사방식 지양, 생산자가 책임인증하는 자율제로 개선
 - 검사기관이 유통과정에서 임의추출 검사, 부적격 상품 출하차 제재
- 인증대상 품목확대,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
 - 인증대상 품목 : (95) 71 → (96) 76개 품목
 - 무농약, 유기재배 환경농산물을 포함,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2004년까지 주요품목으로 확대

■ 原産地 표시방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되, 이행단속 강화

- 원산지표시방법을 신축적으로 조정
 - 생산국명 또는 시·군명 의무표시 품목과 기타 품목 구분운영
-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확대
 - 국산 농수산물 : (95) 63 → (96) 227개 품목
 - 가 공 품 : (95) 30 → (96) 54개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민간명예감시원 위촉운영 (240명), 고발포상금제 시행

9. 環境農業의 育成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농업생산의 경제성 및 안전성과 환경보전을 조화

■ 농약·비료 등 오염원 경감 추진

- 병해충 정밀예찰 및 종합방제체제 확립 등으로 2004년까지 농약사용량을 50%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보급
-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 완효성 비료 개발 등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2004년까지 40%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보급
- 축산분뇨 자원화 모델 개발 보급 및 분뇨 처리시설 설치 확대 등으로 2010년까지 축산분뇨를 100% 자원화 추진

■ 농업자원의 개량·유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객토 사업 추진으로 지력 증진
 - 6년 1주기로 전체 농경지에 대해 토양개량제 시용
- 농업용수 수질기준 제정 등 수질관리제도 개선
 - 농업용수 수질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구축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중산간지에 유기·자연농업단지 조성
 - 95부터 10년간 매년 1000개소, 2,500억원 투자
 - 유기농업·자연농업식 축사 및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등 지원

■ 무농약·유기농산물 등에 대한 재배조건,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인증제를 확대 실시

10. 常時 營農體制 確立과 農村 所得源 다양화

■ 상시 영농체제를 확립하여 농업소득의 증대

- 농한기가 없도록 농가별로 농가경영을 다양화
 - 하계·동계 작목의 작부체계를 개선, 경지이용도 제고
 - 경종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등 복합적 경영확대
- 미곡,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산지조합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의 계열화 추진

■ 농촌을 1·2·3차 複合産業空間으로 開發하여 所得源 擴充

- 농공단지 支援 擴大 및 규제완화, 運營 活性化
 - 농공단지 조성 : (95까지) 276 → (96) 8개소
 - 96신규지정 단지부터 부지조성비 국고보조금 상향조정(50%)
- 농촌특산단지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점 개발
 - 시설현대화 및 판로확대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 특산단지 조성 : (95까지) 597 → (96) 70개소
- 농촌부존자원을 이용한 產地加工食品 開發 촉진
 - 산지가공공장 지원 : (95까지) 1,053 → (96) 202개소

■ 觀光休養産業을 育成, 農村의 地域開發 促進

- 관광농원, 민박마을 등의 건전한 육성으로 도시민의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농촌관광자원으로 개발
 - 관광농원 조성 : (95까지) 294 → (96) 55개소
 - 민박마을 조성 : (95까지) 113 → (96) 45개소

11. 農漁村 生活環境改善과 福祉增進

주택·상하수도 등 농어촌生活環境改善과 교육·의료·연금등 福祉施策 강화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

가. 農漁村生活環境 改善

■ 農漁村마을 整備 및 住居環境改善事業 추진

- 농어촌에 현대식 주거환경을 갖춘 마을을 종합적으로 정비
 - 현대식 문화마을 조성 : (95까지) 51 → (96) 21개지구
- 주택·부엌·화장실 개량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농어촌주택개량 : (95까지) 401 → (96) 45천호
- 면단위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 (95까지) 112 → (96) 48개면

■ 都·農間 交流 促進을 위한 農漁村 交通與件 改善

- 거점 중소도시와 농어촌간 도로망 확충(내무부)
 - 농어촌 도로정비 : (95까지) 14,741 → (96) 1,321km
- 오지·낙도지역의 대중교통수단 지원 등 주민편익제고(건교부)

■ 農漁村地域의 상하수도 시설을 擴充, 「맑은물」 供給 擴大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다목적 용수 공급
 - 암반지하수등 개발 : (95까지) 1,051 → (96) 100개소
- 하수도시설 확충, 농어촌생활하수등 오폐수처리 촉진
 - 농어촌오폐수처리시설 설치 : (95까지) 14 → (96) 16개소

나. 농어민 福祉增進

■ 농어촌학생 大學特例入學 등 教育與件 개선

- 읍·면 고교 졸업생에 대하여 정원의외로 특별전형
 - 96학년도 : 265개 대학 8,700명합격
 - 97학년부터 특례입학 정원 확대 : 2→3%
- 농어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 실업계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 지원
 - (95) 433억원 → (96) 511억원 (90천명)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95) 19천명, 192억원 → (96) 2만명, 200억원

■ 農作業災害共濟 등에 대한 政府支援 실시

- 농작업 상해, 농기계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 공제 가입 농업인들에게 '96년부터 공제료의 50% 보조(109억원)

■ 農漁業人年金의 성공적 정착 지원 (보건복지부)

- 1,256천 농어가에 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국고에서 지원
 - 지원규모 : (95) 455 → (96) 672억원
 - 연간 1인당 26,400원의 보험료 부담경감 혜택

■ 農漁村醫療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 농어촌조합의 국고차등지원, 노인·고액진료비 공동부담 사업 실시
 - 농어촌지원효과 : (95) 1,023 → (96) 1,546억원
- 공공의료기관 장비 확충 및 민간의료기관 금융지원

- 의료시설 지원규모 : (95) 801 → (96) 818억원(농특세)
- 농어촌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설치와 공중보건 한의사제도 도입

12. 農漁村 投融資

가. 42조원 구조개선 投融資 現況 및 計劃

- 42조원 구조개선 투융자계획을 당초 계획(92~2001)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조기에 완료토록 조정
 - 인력육성, 생산기반정비,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등 경쟁력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지원
 - 국고지원 35조4천억원중 경쟁력제고에 31조9천억원(90%), 농어촌활력증대에 3조5천억원(10%) 투융자
- 96년에는 95대비 21%가 늘어난 5조7,610억원의 예산을 확보
 - 생산기반정비 등 경쟁력강화부문에 5조796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등 농어촌활력증대 부문에 6,814억원 지원계획

〈42조 구조개선 투융자 예산 및 향후계획〉

(단위 : 억원)

분야 별	총 규모	92~95	96	97~98
계	353,977 (100%)	151,114 (42.7)	57,610 (16.3)	145,253 (41.0)
경쟁력강화 활력증대	318,947 35,030	137,278 13,836	50,796 6,814	130,873 14,380

※ 96예산 기준시 97~98간 매년 20%수준 이상 증액하면 목표달성

- 98년에 42조원 투융자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2004년까지의 농특세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99년이후의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 구조개선의 마무리와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간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투융자 효율성을 극대화

나. 15조원 農漁村特別稅 투융자 현황 및 계획

-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2004년까지 15조원을 농어촌에 투자
- 경쟁력강화에 중점 지원하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도 균형있게 배분

〈농특세 투융자 예산 및 향후계획〉

(단위 : 억원)

분 야 별	총 규모	94	95	96	97~2004
계	150,000 (100%)	3,480	15,432	15,900	115,188
경쟁력강화	90,775 (60.5%)	1,670	8,473	9,549	71,083
활력증대	59,225 (39.5%)	1,810	6,959	6,351	44,105

- 94~95 2개년에 걸쳐 세수결함이 발생, 사업투자에 어려움.

	94	95
• 세입예산	3,480억원	15,432
• 징 수 액	2,904	13,313
• 세입결함	576	2,119

- 세수결함은 거의 전세목에서 발생되었고 97년부터 법인세 과세 표준액에 부과하는 세목이 폐지되게 됨에 따라 연간 5,000~6,000억원 상당의 세수결함이 예상
- 95년까지는 세수부족으로 대구획 경지재정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 등 사업비를 이월 등 조치
 - 96년도에는 세수부족 등으로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 등의 추진상 어려움 초래

■ 97 예산편성시 농특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

13. 上向式 農政制度의 定着

농어민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자율농정제도를 정착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예산과의 연계강화
 - 지역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의 특성을 감안, 시·군 별로 자율적인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토대로 농어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지원
 - 농어민이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아래로부터의 계획을 수립·추진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으로 농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모든 농림수산사업의 내용, 신청절차, 지원조건 등을 종합 안내하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을 제정, 시·군, 지도소 등에 비치
 - 농어민이 연중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
- 사업자 선정과정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 공개
- 경영상담 및 점검·평가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경영상담을 통한 사업의 선택과 경영장부의 기록으로 농어민의 경영능력 배양 및 사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 사업추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현장애로요인을 발굴·해소

〈중전 농정집행방식과 비교〉

	중전 (하향식)	현행 (상향식)
○ 추진방식	○ 획일적·하향식 - 중앙정부 주도	○ 자율적·상향식 - 중앙·지방·농어민 역할분담 → 자율과 창의 발휘
○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 시·군 농어촌발전 계획 없이 예산편성 - 농어민의 참여배제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 - 농발계획에 있는 사업위주로 예산편성 - 시·군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 농어민이 사업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시·군계획 수립까지 참여 → 농어민에 의한 농정추진
○ 사업실시 요령	○ 개별사업실시요령에 의한 사업지침 시달 - 사업내용의 공지 미흡 및 대상자 선정 비공개	○ 농립수산사업 실시요령을 통해 모든 사업내용과 대상자 선정 결과 및 과정을 공개 -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메뉴, 지원내용 등을 종합 제시, 농어민의 연중사업구상과 신청 가능 -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공개 심의 → 투명한 집행으로 농정신뢰 증진
○ 점검·평가	○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평가조직·규정 등 부재	○ 평가조직 신설 및 실시요령제정 - 투자심사담당관실 설치 - 경영상담·경영장부 기록·관리 - 중앙, 시·도, 시·군 등 단계별 점검·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Feedback 장치 마련) → 투자효율성 제고

여 백

부 록

1. 농림부 과별 직제
2. 외청 및 단체 기구표
3. 기관별 전화번호
4. 농업통상관련 용어

여 백

1. 농림부 직제

공보관실

〈공보담당관〉 503-7211~2, 500-2607~8, 211~2

1. 농림부 홍보의 기본계획 수립
2. 농정 주요시책 홍보
3. 홍보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4. 기타 홍보·공보사항의 처리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503-7221~2, 500-2612, 221~2

1. 감사업무의 계획수립 및 조정
2. 농림부 본부 및 산하관서에 대한 감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4. 사정 및 정화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추진 및 감독

〈조사담당관〉 503-7223~4, 500-2613, 223~4

1.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업협동조합, 인삼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한 감사
2. 민원업무의 처리상황 조사
3.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비상계획관실

〈비상계획담당관〉 503-7226~7, 500-2615, 227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총 무 과

503-7231~7, 500-2617~21, 231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업무
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3. 보안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민원업무의 총괄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503-7240~2, 500-2622~3, 240~1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종합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농업동향에 관한 분석·평가
5. 농림부 외청의 업무보고 총괄

〈행정관리담당관〉 503-7243~4, 500-2624, 242~3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행정제도의 개선 총괄
3.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4. 보고심사에 관한 사항

〈법무담당관〉 503-7245~6, 500-2625, 244~5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법령·예규집 등의 편찬 및 발간
4.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의 정리

〈투자심사담당관〉 503-7247~8, 500-2626, 246~7

1. 농림부문 중장기투자유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계획의 종합조정
2. 농림부문 투자효과분석에 관한 사항
3. 농림부문 정책자금 및 기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평가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세입 관리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농업통계정보관실

〈통계정보기획담당관〉 503-7251~2, 500-2628, 251~2

1. 농업통계사무소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와 복무의 지도·감독
2. 농업통계정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3. 농업통계기준 및 조사방법의 개선
4. 농업관측업무 총괄

〈생산통계담당관〉 503-7253~4, 500-2629, 253~4

1. 농업총조사
2. 경지면적조사
3. 농작물 생산량 조사
4. 국부(國富) 통계조사

〈유통경제통계담당관〉 503-7255~6, 500-2630, 255~6

1. 농산물 유통가격조사
2. 양곡 소비량 및 재고량 조사
3. 농가경제조사
4. 작물별 생산비 조사
5. 축산물 생산비 조사

〈통계정보처리담당관〉 503-7257.9, 500-2631, 257~8

1. 농림부 정보화사업계획수립
2.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3. 농림부 컴퓨터시스템 관리
4. 대외정보관리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정기획과〉 503-7261~3, 500-2634, 261~2

1. 농업구조개선사업의 기획 및 종합·조정
2. 농촌발전기본방침의 수립
3. 연금·의료보험 등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농업인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농업정책심의회 운영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농지관리과〉 503-7264~5, 503-7215, 500-2635, 263~4

1. 농지의 기본정책수립
2. 농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3.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농촌인력과〉 503-7216~7, 500-2636~7, 265~6

1. 농촌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농림계학교의 지원
3. 농업인의 직업훈련
4. 농업법인 기타 농업경영체의 육성

〈농업금융과〉 503-7218~9, 500-2638~9, 267~8

1.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농업자금지원 및 보증제도의 개선
3. 농가부채대책의 수립
4. 전문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5. 농업관련 조세제도 및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

식량정책심의관실

〈식량정책과〉 503-7271~3, 500-2641, 271~2

1. 식량정책 및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2. 양곡의 수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영
4. 식량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식량관리과〉 503-7274~5, 500-2642~3, 273~4

1. 양곡가격의 안정
2. 정부양곡의 재고조사 및 관리
3. 하·추곡의 수매
4.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기반정비과〉 503-7276~7, 500-2644~5, 275~6

1. 경지정리 및 기계화경작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경지정리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술지원
3. 밭 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4. 경지정리에 따른 환지업무에 관한 사항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산기술과〉 503-7281~3, 500-2647, 281~2

1. 장·단기식량생산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영농추진상황 종합분석
3. 농업기상정보의 수집 및 농작물재해대책의 추진
4. 농림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환경농업과〉 503-7284~5, 500-2648~9, 283~4

1.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2. 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3. 농약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4. 농업환경의 오염방지 및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5. 농작물병충해의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

〈농업기계자재과〉 503-7228~9, 500-2650~1, 285~6

1. 농업기계화 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농림업용 자동화 시설의 개발 및 보급지원
3. 비료산업의 육성 및 수급안정

국제농업국

〈국제협력과〉 503-7291~3, 500-2653, 291~2

1. 농림업분야 국제통상협력정책의 총괄
2. 농업분야 다자간 통상협력
3. 국제농업관련단체 및 해외주재 농무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OECD 가입과 관련한 기본계획수립·조정

〈기술협력과〉 503-7294~5, 500-2654~5, 293~4

1. 국제농업기술 협력업무의 수립·조정
2. WTO/SPS 및 WTO/TBT 협정관련 업무총괄
3. 동·식물검역에 대한 국제협력 및 조정
4. 농업관련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
5. 해외농업개발 및 외국인의 국내 농업투자업무

〈통상협력과〉 503-7296~7, 500-2656~7, 295~6

1. 농업통상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개별국가와의 농업통상협력
3. APEC 각료회의의 다자 및 양자간 협상에 관한 사항

〈무역진흥과〉 503-7298, 503-7278, 500-2658~9, 297~8

1. 농산물 장단기 수출입정책의 수립
2. 농산물 수출진흥관련 기관·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무역정보 수집·분산 및 수출입 동향 집계·분석
4. 농산물 관세제도 총괄 운영

농촌개발국

〈개발기획과〉 504-9402~3, 500-2662~3, 302~3

1. 농업생산기반 개발계획의 수립
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계의 설립 및 육성지원
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통계·조사

〈농촌정비과〉 504-9404~5, 500-2664~5, 304~5

1.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정주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농촌생활용수개발 및 농촌오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3. 농외소득원개발에 관한 사항
4. 한계농지정비사업계획의 수립추진 및 개간에 관한 업무
5. 농촌주택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용수과〉 504-9406~7, 500-2666~7, 306~7

1. 농촌용수 개발계획의 수립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기술업무의 종합·조정
3.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4. 해안 간척지개발계획의 수립
5. 한해예방대책 및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과〉 504-9408~9, 500-2668~9, 308~9

1. 농업생산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2. 수리시설·방조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용수 수질오염대책의 수립
4. 배수개선사업계획의 수립
5. 수해예방대책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유통정책국

〈유통정책과〉 504-9411~2, 500-2671~2, 311~2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유통중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3. 농산물의 남북간 유통에 관한 사항
4.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지원 및 운영지도
6. 농산물의 규격화, 안전성 관리 및 소비촉진

〈유통관리과〉 504-9413~4, 500-2673~3, 313~4

1. 주요농산물의 수매·방출등 가격안정대책의 수립·시행
2.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3. 농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4. 국내산 및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 관리
5.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업무

〈시 장 과〉 504-9415~7, 500-2675~6, 315~6

1.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개설·정비 및 운영지원
3. 유사도매시장 정비계획의 수립
4. 간이집하장, 포장센터등 산지유통시설의 지원

〈가공산업과〉 504-9417~8, 500-2667~8, 317~8

1.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2. 전통식품의 개발 및 보급지원
3. 농산물 가공식품의 표준화 및 저장·보관 기술개발
4.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원예특작국

〈원예특작과〉 504-9421~2, 500-2681~2, 321~2

1. 원예·잠엽·특용작물의 수급계획 총괄
2. 원예·잠엽·특용작물의 육성 업무 총괄
3. 특용작물·식용유·누에고치·생사의 수급안정
4. 인삼생산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5. 종묘산업의 총괄

〈채 소 과〉 504-9423~4, 500-2683~4, 323~4

1. 채소류의 생산계획 및 수급조절
2. 채소류의 저장·가공 및 가격유지
3. 채소단지의 조성·계약재배 및 수매
4. 주요농작물 종자의 품종개량 및 수출입 업무

〈과수화훼과〉 504-9425~6, 500-2685~6, 325~6

1. 과수작물 및 화훼의 생산계획 및 수급조절
2. 과수작물 및 화훼의 생산·유통 지원
3. 과수작물 및 화훼의 종자·종묘 및 종근의 수급
4. 과수작물 및 화훼의 품종 및 품질개량 지원

축 산 국

〈축산정책과〉 504-9431~3, 500-2688, 331~2

1. 장·단기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축산물관련 대외통상협력 지원
4. 가축개량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 축산물관련 환경오염방지 및 축산분뇨처리대책 추진

〈축산경영과〉 504-9434~5, 500-2689~90, 333~4

1. 돼지·닭·기타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2.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3. 사료산업의 육성 및 사료수급의 안정
4. 초지조성, 사료작물의 재배·이용 및 사료자원의 개발
5. 우유의 수급관리 및 유통제도개선과 유가공산업의 육성

〈축산물유통과〉 504-9436~7, 500-2691~2, 3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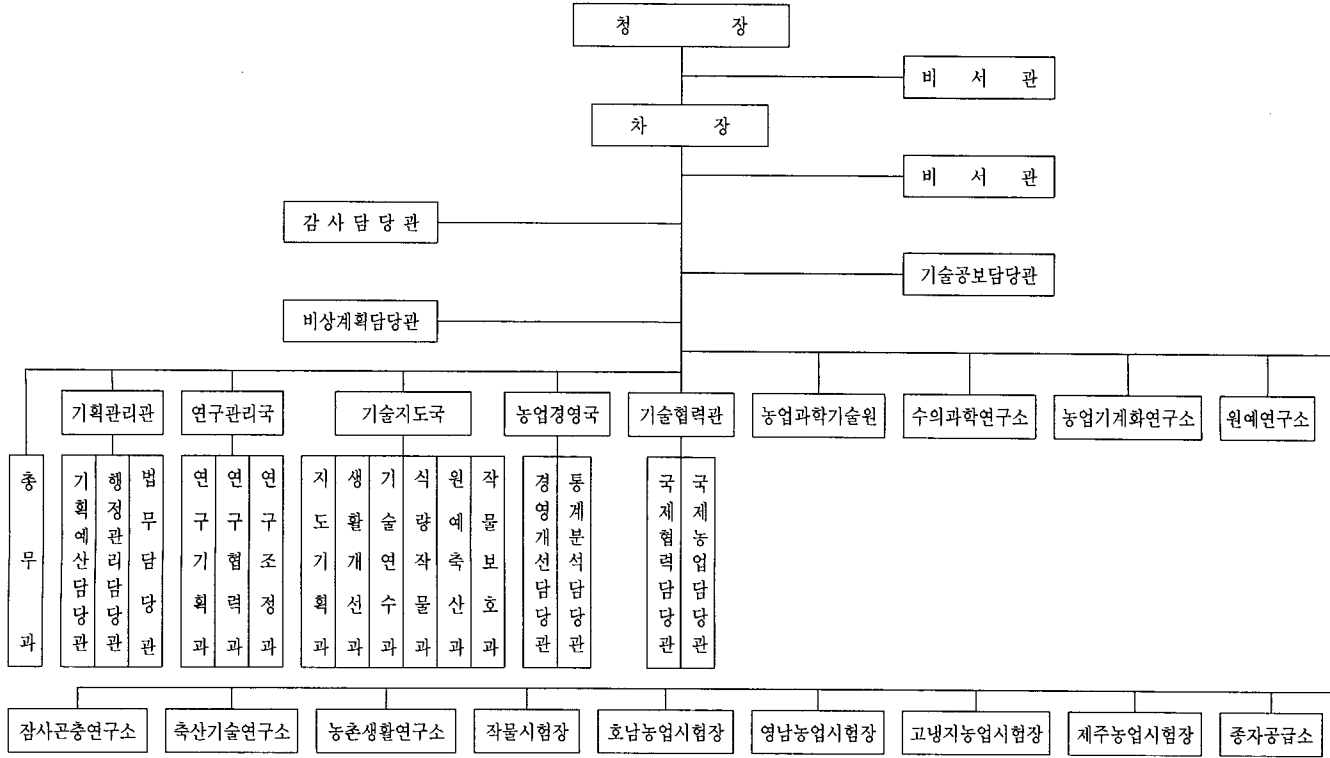
1. 축산물유통개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축산물수급조절 및 가격업무 총괄
3. 한육우·쇠고기의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
4. 축산물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육가공산업 및 원모피가공산업의 육성 지원
6. 축산물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

〈가축위생과〉 504 - 9438~9, 500 - 2693~4, 3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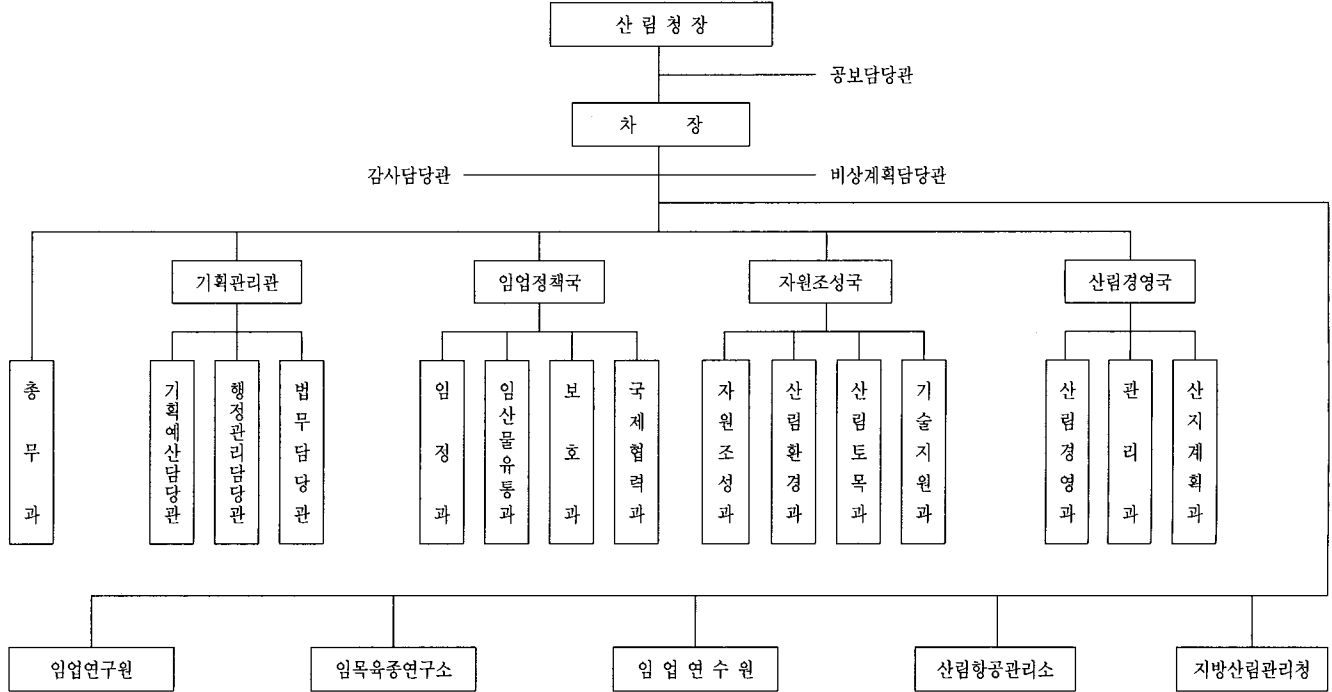
1. 축산물위생관리대책 및 유해잔류물질검사
2. 가축질병예방 및 긴급 방역 업무
3. 수출입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및 위생검사
4. 수의사 국가시험·면허·등록
5. 동물약품에 관한 수출입 및 제조에 관한 사항

2. 외청 및 단체 기구표

농촌진흥청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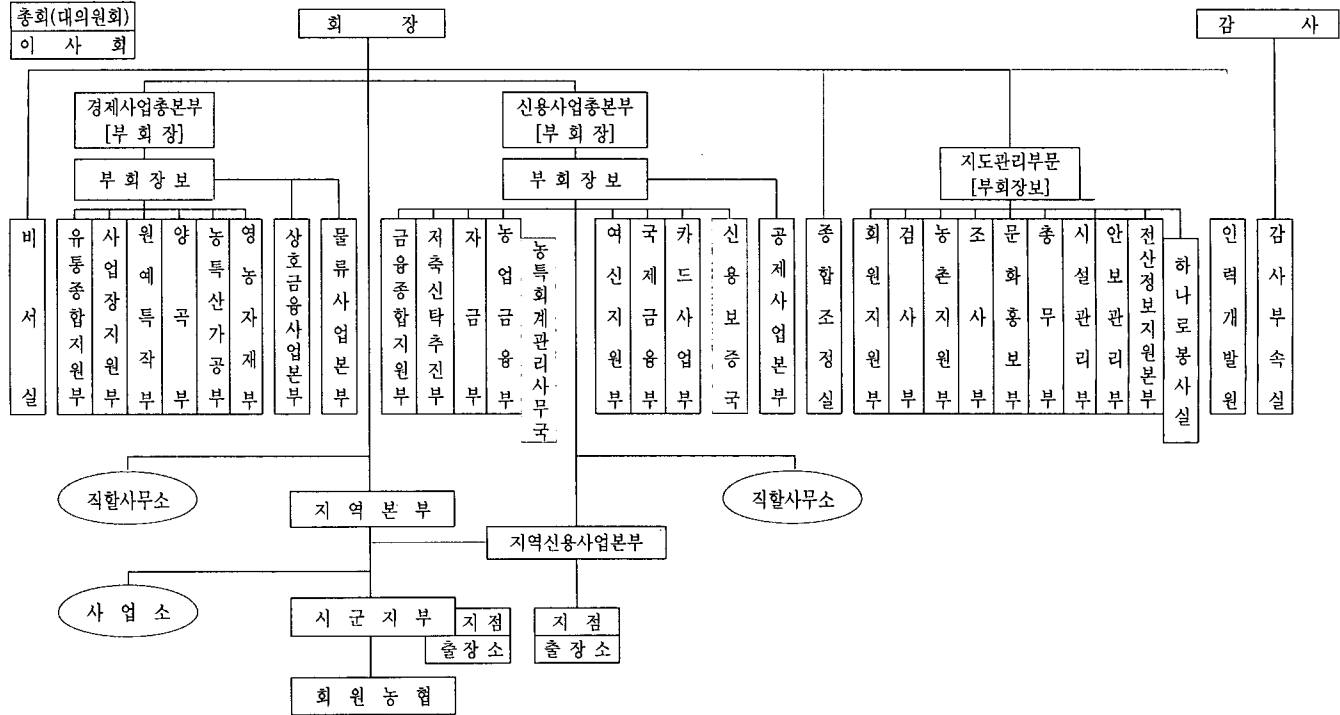


산 립 청 기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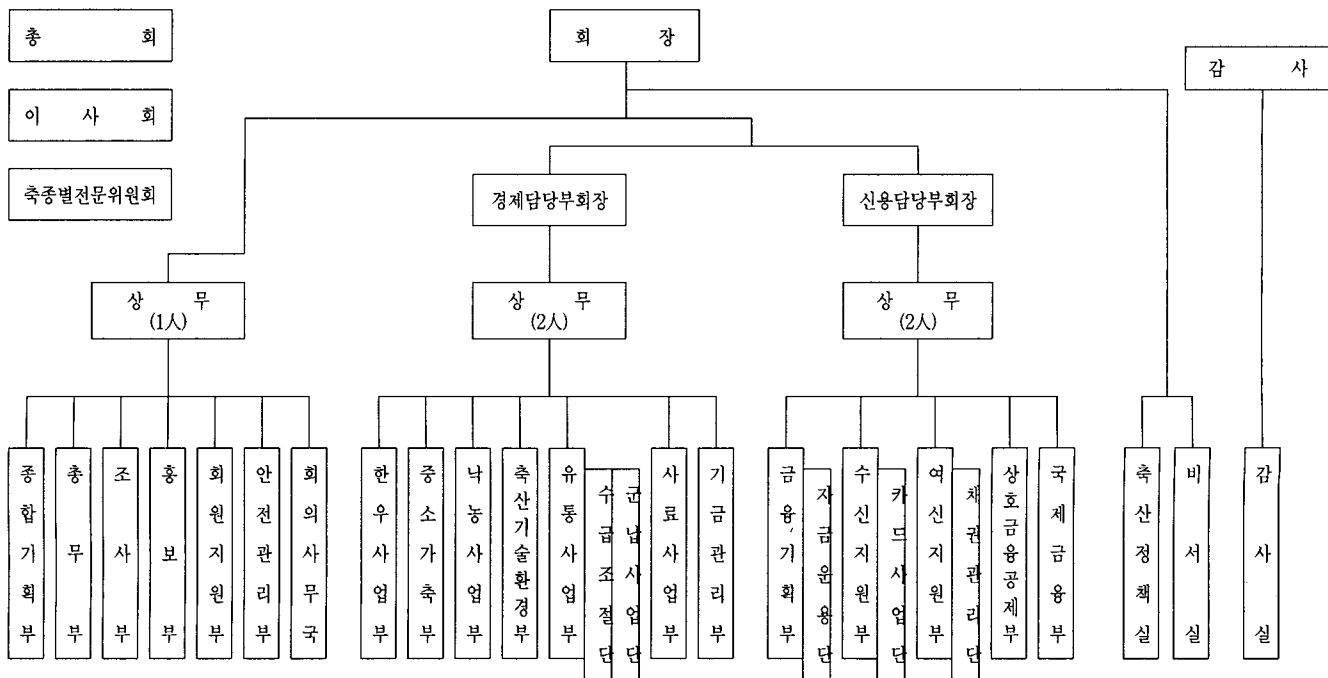


농협조직 및 관할체계도

【중앙본부 : 24부실, 5사업본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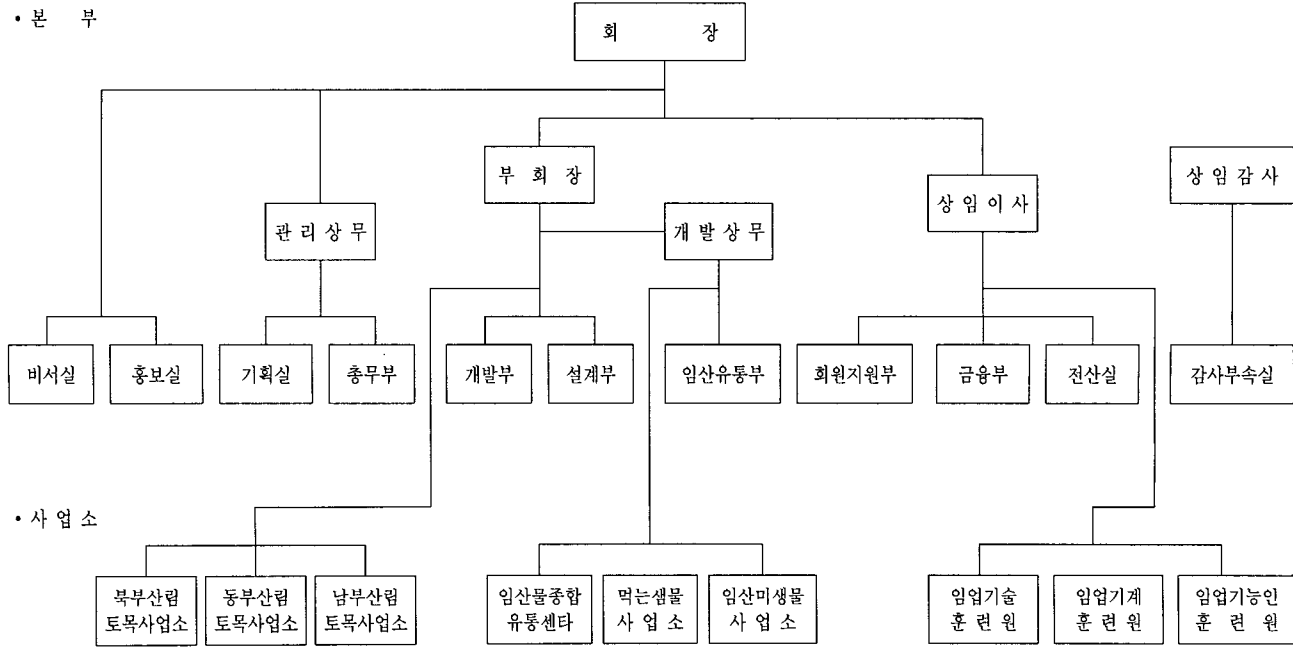
축협중앙회 기구



※ 18부 3실 1국 (부서 부속단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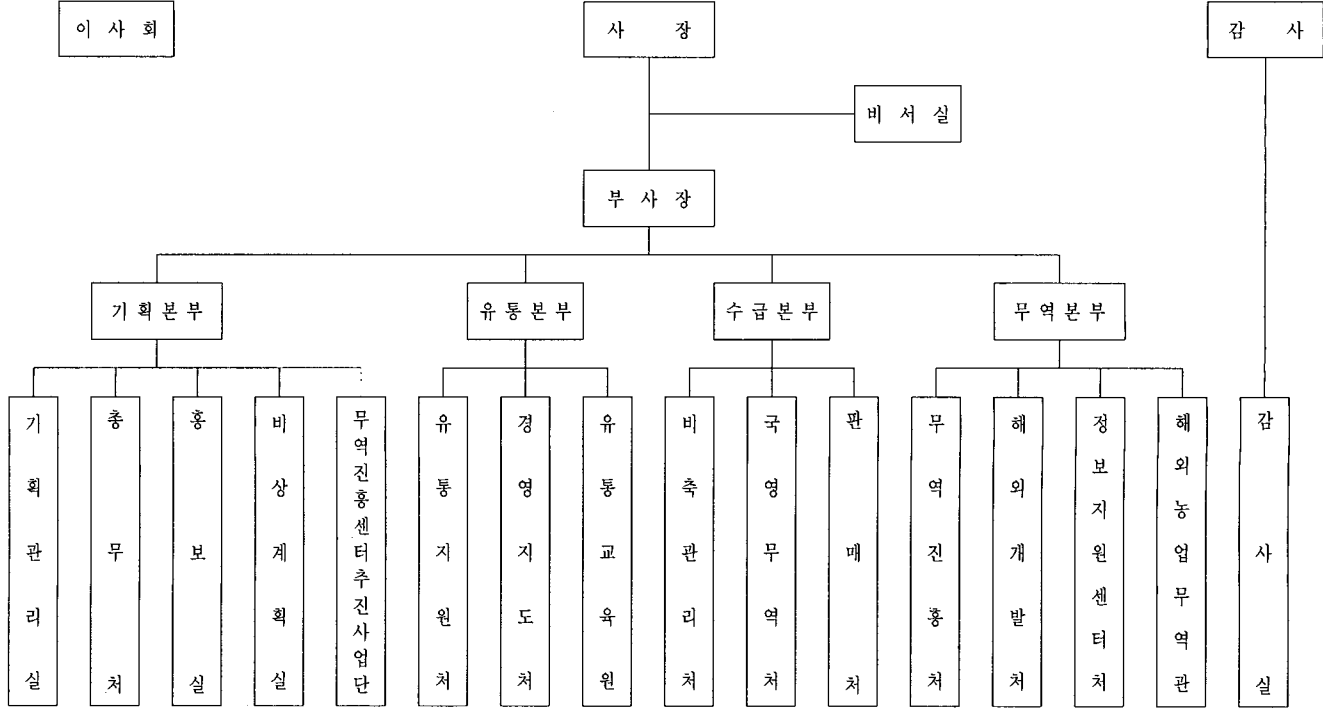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기구

• 본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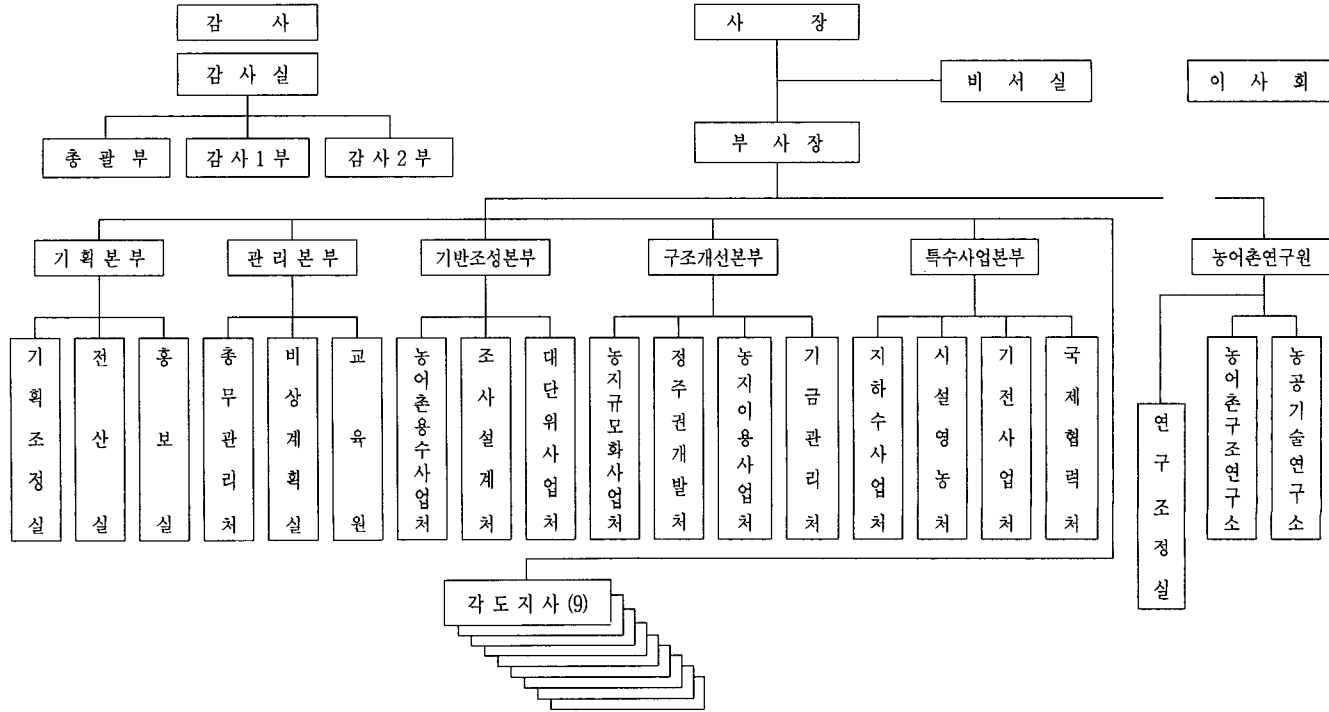


• 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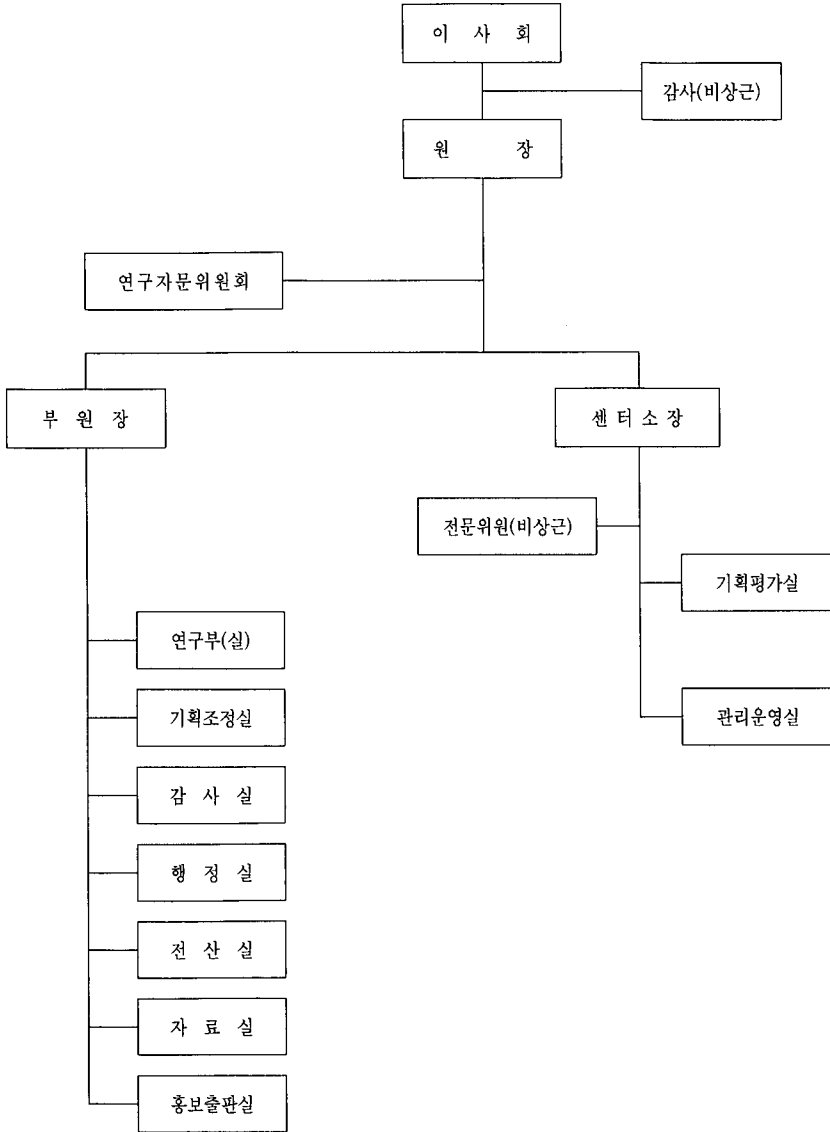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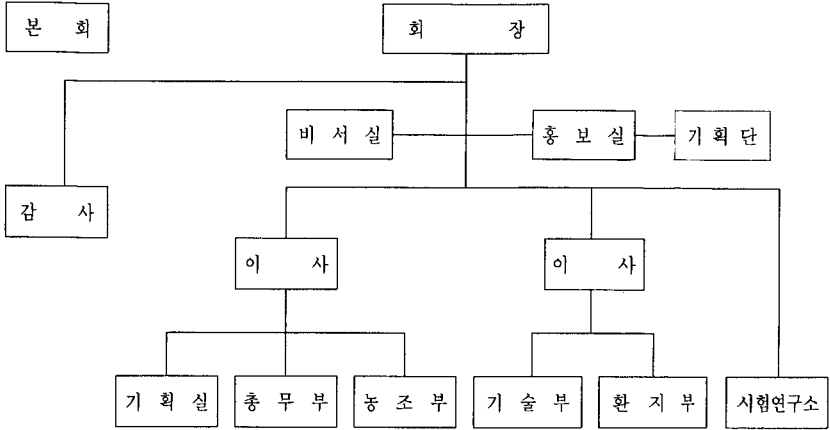
농어촌진흥공사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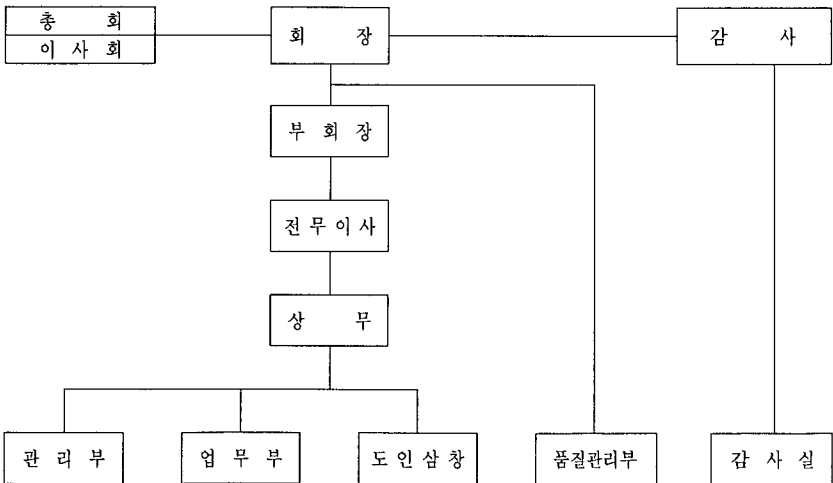
농촌경제연구원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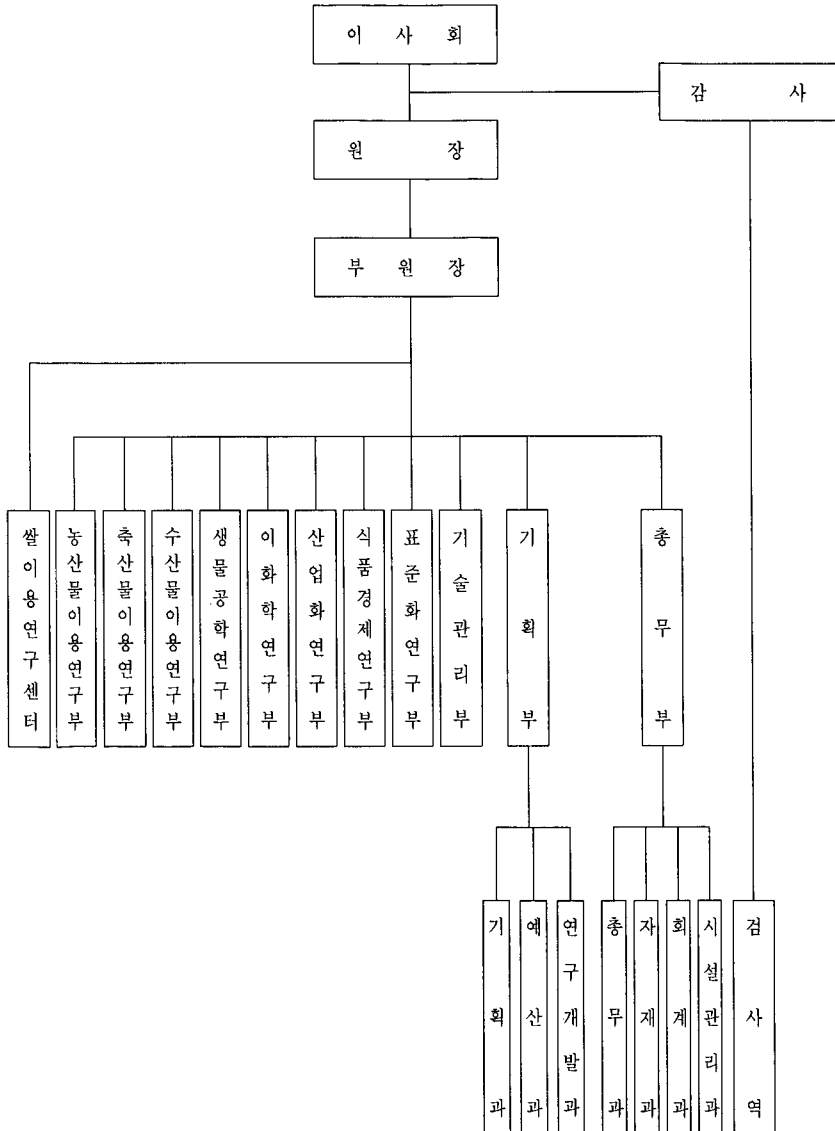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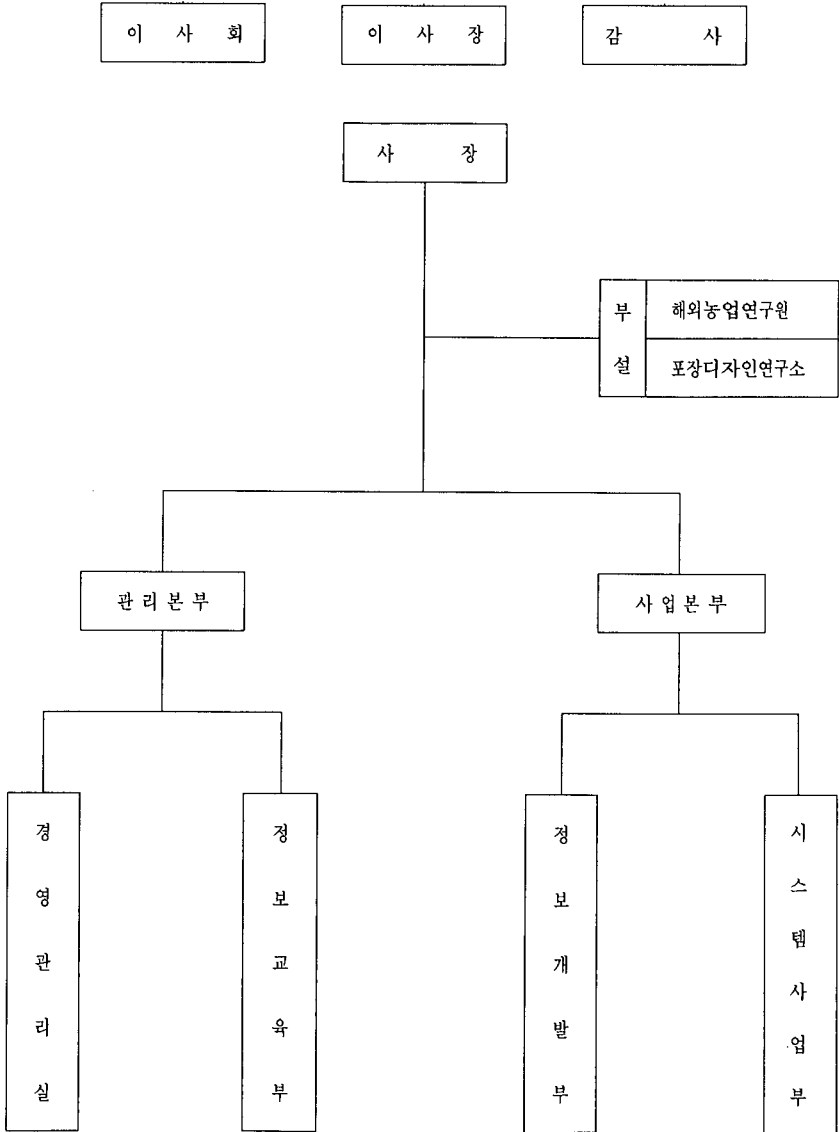
인삼협동조합중앙회 기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구



농림수산정보센터 기구



3. 기관별 전화번호

1. 농림부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구 분	호 실	구내번호	일 반 전 화
장 관	3동		503-7201~2
비 서 실 (F A X)	401	2601	503-7203 507-3968
차 관	403		503-7204 * 011-221-1072
비 서 실 (F A X)		2602	503-7205 504-6658
차 관 보	404	2603	503-7206 * 011-260-7206
기 획 관 리 실 장	405	2604	503-7207 * 011-260-7210
농 업 정 책 실 장	406	2605	503-7208 * 011-260-7207
공 보 관	307	2606	503-7210
공 보 담 당 관	303	2607-8	503-7211~2
기 자 실 (F A X)	304	2609-10	503-7213~4 503-7238 503-7209
감 사 관	410	2611	503-7220
감 사 담 당 관 (F A X)	316	2612	503-7221~2 507-2094
조 사 담 당 관	315	2613	503-7223~4
비 상 계 획 관	221	2614	503-7225
비 상 계 획 담 당 관	220	2615	503-7226~7

구 분	호 실	구내전화	일 반 전 화
총 무 과 장	407	2616	503-7230
서 무	305	2617	503-7231
			503-7236
인 사	408	2618	503-7232
			503-7237
경 리	305	2619	503-7233
			504-5507
용 도	409	2620	503-7234
			504-5508
문 서	306	2621	503-7235
			504-5509
(F A X)			503-7249
통 신 실	416	2930	
기 획 예 산 담 당 관	422	2622-3	503-7240~2
			*011-260-7206
(F A X)			507-2649
행 정 관 리 담 당 관	421	2624	503-7243~4
법 무 담 당 관	420	2625	503-7245~6
투 자 심 사 담 당 관	420	2626	503-7247~8
농 업 통 계 정 보 관	222	2627	503-7250
통 계 정 보 기 획 담 당 관	223	2628	503-7251~2
(F A X)			507-3961
생 산 통 계 담 당 관	224	2629	503-7253~4
유 통 경 제 통 계 담 당 관	225	2630	503-7255~6
통 계 정 보 처 리 담 당 관	201	2631	503-7257/59
전 산 기 계 실	112	2632	503-0542

구 분	호 실	구내전화	일 반 전 화
농 정 기 획 심 의 관	411	2633	503-7260
농 정 기 획 과	412	2634	503-7261~3
(F A X)			507-3962
농 지 관 리 과	414	2635	503-7264~5
농 촌 인 력 과	413	2636-7	503-7216~7
농 업 금 융 과	415	2638-9	503-7218~9
협동조합발전기획단			571-5302~4
식 량 정 책 심 의 관	314	2640	503-7270
			* 011-225-7271
식 량 정 책 과	313	2641	503-7271~3
(F A X)			503-2306
식 량 관 리 과	311	2642-3	503-7274~5
기 반 정 비 과	312	2644-5	503-7276~7
농 산 정 책 심 의 관	418	2646	503-7280
농 산 기 술 과	308	2647	503-7281~3
			* 011-225-7280
(F A X)			507-3963
환 경 농 업 과	309	2648-9	503-7284~5
농 업 기 계 자 재 과	310	2650-1	503-7228~9
국 제 농 업 국 장	322	2652	503-7290
국 제 협 력 과	323	2653	503-7291~3
(F A X)			507-2095
기 술 협 력 과	323	2654-5	503-7294~5
통 상 협 력 과	301	2656-7	503-7296~7
무 역 진 흥 과	302	2658-9	503-7298
			503-7278

구 분	호 실	구내전화	일 반 전 화
농 촌 개 발 국 장	212	2660	504-9400 *011-227-9401
개 발 기 획 관	209	2661	504-9401
개 발 기 획 과 (F A X)	211	2662-3	504-9402~3 507-3964
농 촌 정 비 과	208	2664-5	504-9404~5
농 촌 용 수 과	213	2666-7	504-9406~7
시 설 관 리 과	210	2668-9	504-9408~9
유 통 정 책 국 장	317	2670	504-9410
유 통 정 책 과 (F A X)	318	2671-2	504-9411~2 507-3965
유 통 관 리 과	321	2673-4	504-9413~4
시 장 과	320	2675-6	504-9415~6
가 공 산 업 과	319	2677-8	504-9417~8
원 예 특 작 국 장	205	2680	504-9420
원 예 특 작 과 (F A X)	204	2681-2	504-9421~2 507-2096
체 소 과	203	2683-4	504-9423~4
과 수 화 훼 과	202	2685-6	504-9425~6
축 산 국 장	217	2687	504-9430 *011-308-6868
축 산 정 책 과 (F A X)	218	2688	504-9431~3 507-3966
축 산 경 영 과	216	2689-90	504-9434~5
축 산 물 유 통 과	215	2691-2	504-9436~7
가 축 위 생 과	214	2693-4	504-9438~9

구 분	호 실	구 내	일 반 전 화
(기 타 부 서)			
특 별 대 책 실	417	2698	503-0443
국 제 회 의 실	425	2931	502-2309
소 회 의 실	219	2933	
도 서 실	B115	2927	
안 내 실(안 내 동)		2600	503-7200
4 층 안 내		2928	
운 전 자 대 기 실	B105	2929	
농 진 청 연 락 사 무 실	206	2944	503-7130~2
당 직 실	B103	2600	503-7200

2. 외 청

농촌진흥청 (0331) 292-4370~9 (야) (0331) 292-4370		산림청 961-2114 (야) 962-0234	
직 위	사 무 실	직 위	사 무 실
청 장	(0331) 292-4201~3	청 장	962-4211
차 장	292-4204~5	차 장	962-5211
기획관리관	292-4206	기획관리관	962-7812
농업경영관	292-4210	임업정책국장	962-7813
기술협력관	292-0954	자원조성국장	962-7814
연구관리국장	292-4207	산림경영국장	962-7815
기술지도국장	292-4208		

3. 산하관서

기 관 명	대 표 전 화
국 립 농 산 물 검 사 소	(0343) 46-0124
농 업 공 무 원 교 육 원	(0331)292-0913
국 립 동 물 검 역 소	653-5040
국 립 식 · 물 검 역 소	(0343) 49-0525
경 기 농 수 산 통 계 사 무 소	(0331)291-6117
강 원 "	(0361) 54-5217
충 북 "	(0431) 53-7250
충 남 "	(042)822-5985
전 북 "	(0652)211-3341
전 남 "	(062)369-5595
경 북 "	(053)955-0101
경 남 "	(0551) 81-0501
제 주 "	(064) 21-6602

4. 해외농무관

주 재 국	전 화 번 호
미 국	(001-1-202) 939-5673
이 태 리	(001-39-6) 808-8769
일 본	(001-81-3) 5476-3267
제 네 바 대 표 부	(001-41-22) 791-0111
EC 대 표 부	(001-32-2) 675-5777
중 국	(001-8610) 6505-2608
OECD 대 표 부	(001-33-1)42-15-2640
	" 44-05-2057

5. 산하단체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농 협 중 앙 회 장	397-5114
농 어 촌 진 흥 공 사 장	737-4415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 장	(0343) 20-3114
축 협 중 앙 회 장	20-3001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장	795-8201~5
농 조 연 합 회 장	793-5211
한 국 식 품 개 발 연 구 원 장	224-8114
인 삼 협 동 조 합 중 앙 회 장	475-8021
임 협 중 앙 회 장	962-7312~5
	962-7211
	260-5114
	260-5001
	(0342)780-5114
	780-5001
	201-3304~8
	201-1764
	416-9416~7
	416-9426

6. 청 와 대

구 분	전 화 번 호
농 수 산 수 석 비 서 관	770-0291
농 수 산 정 책 비 서 관	770-0058
농 어 촌 개 발 비 서 관	770-0305

7. 국회사무처 : 농림해양수산위

구 분	전 화 번 호
수 석 전 문 위 원	784-1369, 788-2726
전 문 위 원	784-3273, 788-2829
입 법 심 의 관	784-2724, 788-2548
입 법 조 사 관, 행 정 요 원	788-2688, 788-2190

8. 유관기관

구	분	전화번호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738-9401
	1행조 (총괄심의관)	720-2014
	2행조 (정책평가관)	720-2733
	4행조 (예방심의관)	734-8796
	행정쇄신위원회	733-9097~8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500-5013
	제2심의관	500-5113
	국고국장	500-5379
	경제정책국장	500-5042
	국민생활국장	500-5062
	예산총괄과	500-5114~6
	예산정책과	500-5117~9
	농수산예산담당관	500-5132~3
	국고과	500-5381~2
	지역정책과	500-5049
	물가정책과	500-5063~5
	산업경제과	500-5046
감사원	제1국장	7219-301
	1국5과	7219-150~6
총무처	인사국장	720-4340
	조직국장	720-4384
	인사과	720-4341
	상훈과	720-3904
	조직2과	720-4098
법제처	제2국장	724-1499
	총무과	724-1320
	농림수산담당법제관	724-1494

9. 유관단체

단 체 명	전 화 번 호
가 나 안 북 민 회	(0371) 762-5201
일 가 기 념 상 재 단	564-5990
대 산 농 촌 문 화 재 단	517-6008
국 제 농 업 개 발 원	401-6881
한 국 농 지 개 발 연 구 소	585-3063
한 국 농 어 촌 환 경 기 술 연 구 소	575-2368
한 국 식 품 개 발 연 구 원	(0342) 780-9114
축 산 물 유 통 사 업 단	548-8597
이 시 돌 농 촌 사 업 개 발 회	(064) 96-4184
정 옥 애 향 사 업 회	(0339) 73-3685
충 북 농 촌 개 발 회	(0445) 32-8063
한 국 동 물 보 호 협 회	(053) 629-6143
도 드 램 · 농 사 문 화 재 단	(0336) 32-0756
한 국 화 훼 연 구 원	(0337) 84-0656
농 립 수 산 정 보 센 타	589-2050
전 국 농 업 기 술 자 협 회	794-7270
제 주 농 업 개 발 연 구 소	(064) 58-7630
한 국 농 촌 문 제 연 구 소	788-3483
한 국 농 어 촌 정 책 연 구 소	391-7968
농 정 연 구 포 량	874-8251~2
한 국 농 어 촌 사 회 연 구 소	337-2662~3
신 농 민 강 좌 연 구 회	(0431) 61-2593
농 촌 돕 기 운 동 회	431-4293
한 국 농 선 회	555-0691
한 국 농 어 촌 복 지 연 구 회	817-4528
한 국 농 어 업 경 영 인 연 합 회	3474-7651
한 국 협 동 조 합 연 구 소	3141-5691

단 체 명	전 화 번 호
한 국 제 분 공 업 협 회	777-9451
한 국 전 분 · 당 협 회	521-7741
한 국 대 두 가 공 협 회	719-9480
국 산 공 가 공 업 협 회	3401-1964
한 국 식 생 활 개 발 연 구 회	833-1623
진 국 양 곡 상 연 합 회	497-1011~2
한 국 식 생 활 개 선 국 민 운 동 본 부	579-8121
대 한 곡 물 협 회	583-2111
한 국 양 곡 가 공 협 회	(042) 284-6125
한 국 쌀 가 공 식 품 협 회	574-6644
우 리 밀 살 리 기 운 동 본 부	322-5551
한 국 농 립 수 산 과 학 협 회	(0331) 290-2305
한 국 유 기 농 업 협 회	406-4462
한 국 수 출 입 식 물 방 제 협 회	(032) 887-6850~1
한 국 자 연 농 업 협 회	482-6774
한 국 지 속 농 업 산 학 연 구 회	(0591) 761-5425
정 농 회	(0351) 865-1877
축 산 립 연 구 소	(0445) 33-8179
농 약 판 매 협 회	585-2145
농 약 공 업 협 회	3474-1590~4
한 국 첨 단 농 업 시 설 협 의 회	(0343) 20-3501
한 국 농 민 발 명 협 회	(0443) 45-3223
F A O 한 국 협 회	584-3171
국 제 농 어 촌 개 발 협 력 단	775-2684
농 공 회	782-5639
농 어 촌 마 을 주 택 연 구 회	292-0311
한 국 관 광 농 원 협 회	419-8981
농 어 촌 특 산 단 지 중 앙 연 합 회	(042) 483-7307
우 리 농 촌 살 리 기 운 동 본 부	3141-5004
지 역 개 발 연 구 소	784-2638
한 국 관 개 배 수 위 원 회	(0343) 20-3001

단 체 명	전 화 번 호
한 국 농 공 학 회	562-3627
한 살 림	573-0614
공 생 농 두 레	(053) 755-2995
한 국 농 축 수 산 유 통 연 구 원	517-7885
한 국 농 산 물 중 도 매 인 조 합 연 합 회	407-3718
한 국 식 품 과 학 회	566-9937
한 국 가 공 식 품 수 출 협 회	812-1626
한 국 전 통 가 공 식 품 협 회	792-2183
한 국 농 수 산 물 유 통 가 공 협 회	589-1635
한 국 생 약 협 회	967-8133
대 한 잠 사 회	783-6073
한 국 잠 종 협 회	783-7671~2
한 국 상 묘 협 회	783-7673
한 국 영 지 협 회	957-0183~5
한 국 농 산 물 냉 장 협 회	(053) 741-7101
한 국 종 묘 협 회	578-7637
대 한 두 채 협 회	203-2507
대 한 온 실 산 업 협 회	578-3025~6
호 남 온 실 작 물 연 구 소	(062) 511-0281
경 상 시 설 원 예 기 술 개 발 협 회	(0591) 55-4134
한 국 민 속 채 소 생 산 자 협 회	409-2090
한 국 과 수 협 회	(0331) 41-5931
한 국 과 수 묘 목 협 회	(0417) 568-5337
한 국 화 훼 협 회	579-2000
한 국 화 원 통 신 배 달 협 회	793-1303
한 국 종 균 생 산 협 회	(0331) 34-5201
한 국 축 산 학 회	581-0065
양 돈 산 학 연 구 소	578-1411
양 돈 산 학 협 동 연 구 회	(0591) 758-1892
한 국 경 주 마 생 산 자 협 회	(064) 82-8796
한 국 종 축 개 량 협 회	588-9301~4

단 체 명	전 화 번 호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588-7055
한 국 유 가 공 협 회	584-3631
대 한 양 계 협 회	588-7651~4
대 한 양 돈 협 회	553-3942~6
한 국 양 료 협 회	969-6600
한 국 양 봉 협 회	763-1372
한 국 애 완 동 물 보 호 협 회	278-0661~2
한 국 모 피 가 축 협 회	876-0712
한 국 사 료 협 회	581-5721~33
한 국 단 미 사 료 협 회	585-2223~4
한 국 대 용 유 사 료 협 회	597-0688
한 국 위 생 계 육 산 업 협 회	536-9855
한 국 흑 염 소 협 회	401-0792
한 국 오 리 협 회	(0331) 45-1153
한 국 축 산 사 설 환 경 기 계 협 회	(0343) 48-0369
한 국 가 축 인 공 수 정 사 협 회	586-9408
한 국 관 상 조 류 협 회	253-4954
한 국 육 류 수 출 입 협 회	515-2306~7
한 국 동 물 약 품 협 회	785-4222
한 국 축 산 물 위 생 처 리 협 회	525-7275
축 협 동 우 회	485-3141~2
농 우 회	778-7629
한 국 농 수 산 물 도 매 시 장 법 인 협 회	407-3679
대 한 수 의 사 회	392-2526
한 국 유 기 비 료 공 업 협 동 조 합	771-8444
한 국 곡 물 차 가 공 업 협 동 조 합	652-5166
한 국 낙 화 생 가 공 업 협 동 조 합	785-1032
한 국 동 물 약 품 공 업 협 동 조 합	785-4222
한 국 배 합 사 료 공 업 협 동 조 합	586-8720

여 백

4. 농업통상관련 용어

AARRO(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 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아시아·아프리카 지역국가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농민의 후생증진 및 기아와 빈곤의 제거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62.3월 설립된 국제기구, 우리나라는 63.2월 가입하였음.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농업보조총액측정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국내농업보조의 감축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수단으로서 WTO농업협정에 규정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품목별 또는 품목불특정 감축대상보조금의 합계액을 말함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89년 1월 호주 호크수상의 아·태지역 경제협력기구 창설제안에 따라 설립된 아·태지역 경제협력체로서 현재 18개국(95년)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94년 보고르 선언이후 아·태지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장기목표를 2010(선진국)/2020(개도국)까지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중에 있음

Border Protection(국경보호)

국내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일체의 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함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 : 관세 협력이사회)

각국 관세제도의 간소화 및 표준화, 관세문제 관련정무간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무역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52.11월 발족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8.7월 가입하였음

CMA(Current Market Access : 현행시장접근)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MMA, CMA 모두 T.Q로 C/S에 양허됨

De-minimis(의무면제)

법률은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으로 WTO 농업협정에서는 감축대상 국내보조가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이하일 경우는 감축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말함

DSB(Dispute Settlement Body : 분쟁해결기구)

WTO에 설치된 회원국간 제기된 분쟁문제를 다루는 상설기구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아·태지역내 경제사회개발 추진, 경제활동증대, 정보교류 및 연구등을 목적으로 47년 설립된 UN 산하기구, 우리나라는 '54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함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유엔식량농업기구)

모든 국민의 영양기준 및 생활의 향상, 식량 및 농업생산물의 생산과 분배의 능률증진, 농민의 생활상태의 개선, 이를 통한 세계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45.10월 발족된 UN 산하기구. 우리나라는 49년 가입하였음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마련된 WTO설립협정의 부속협정으로 서 협정적용대상 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일반적 의무사항, 서비스 시장개방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GATT 1994(General Agreement on : Tariffs and Trade 1994 :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서 1947년 채택된 기존의 GATT 규정, 관세양허의정서, 가입의정서 기존 GATT 체제하에서의 일부 결정 사항, UR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GATT 2조 1항(b), 17조, 19조, 24조 waiver, 28조, 35조의 양허 및 1994년 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로 구성됨

HS(Harmonized System :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국제교역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관세부과나 무역통계·운송·보험 등 국제교역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상품분류제도(처음 6단위는 세계공통, 뒤 4자리는 국별 임의결정 사용)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 국제농업개발기금)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증대촉진, 이를 위한 융자 및 보조금지원을 목적으로 77.12월 발족된 UN산하기구, 우리나라는 78.1월 가입하였음.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 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제통화금융질서

를 확립하고,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7.11월 발족된 UN산하기구, 우리나라는 55.8월 가입하였음.

MFN(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최혜국대우원칙)

통상관계 및 관세부과에 있어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조건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국가에게도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이기도 함

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C/S에 반영됨.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C/S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원칙)

모든 수입상품과 서비스가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않아야 한다는 일반원칙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 북미자유무역협정)

미·캐나다·멕시코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간 경제성장 촉진과 개도국에 대한 원조,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확대를 이념으로 61.9월 설립하였으며, 본부는 프랑스,파리에 두고있음. OECD의 성격은 ①포괄적인 국제경제협의체 ②범

세계적인 무역·경제관련 규범의 선도역할 ③지역협약체 및 세계경제협력기구 등과의 접목 ④순수경제기구이면서도 정치적 성격 공유 등임. 우리나라는 '95.3월 가입신청서를 공식제출하면서 1996년까지 가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OECD에 공식통보했으며 가입협약이 예정대로 되면 9월 또는 10월에 이사회의 가입초청이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되면 가입이 마무리 됨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관련 산업이나 직접 경쟁되는 상품의 국내생산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때 해당 산업이나 국내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인상, 수입수량 제한, 관세할당제도 등 산업피해구제조치를 의미함

SOM(Senior Officials Meeting : (APEC 고위간부회의)

APEC 각료회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운영기구로서 회원국의 차관보급 관리들로 구성되며, CTI,EC 10개 WG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하며 협력사업을 논의함

SSG(Special Safeguard :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치(TE)감축이행 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피해구제제도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취해지는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조치의 운용에 관한 WTO부속협정. 동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일반원칙, 적정보호수준, 판정기준, 조화 및 동등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State Trading(국영무역)

대외상품 거래를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기간이 독점하여 운영하는 무역제도.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됨.

Subsidies(보조금)

수출증대 또는 수입감소의 효과를 갖는 모든 정부지원. 즉 장려금, 금융지원(저리융자), 세제지원(조세감면) 및 사회복지지원금 등을 의미. 국내생산자에 대한 국내보조금과 수출증대와 관련된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함.

SBS(Simultaneous Buy and Sell : 업계간 자율거래제도)

쇠고기 수입제도로서 일정범위의 국내수요자에게 기본쿼타의 일부분을 배정하여 정부나 축산물유통 사업단의 개입없이 국내 수요자가 직접 상담·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Tariffication(관세화)

관세이외의 각종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효과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입규제를 철폐(수입자유화)하는 대신 수입규제와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 수입가격이 국내가격과 같게 되도록 관세를 높게 조정하는 것을 말함

TE(Tariff Equivalent : 관세상당액)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를 의미함.

Tarff Concession(관세양허)

국가간의 관세·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 관세양허에는 ①현행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인하 ②관세를 더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 ③현행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겠다는 한도양호 등이 있음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무역정책검토제도)

각국의 무역정책을 WTO회원국이 모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평가·검토하도록 한 제도로서 1-4위 교역국은 매2년마다, 5-20위 교역국은 매4년마다 기타국은 매6년마다 실시된다.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마련된 WTO설립협정의 부속협정으로서 협정적용대상 지적재산권의 범위 및 정의, 일반적 의무사항, 컴퓨터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TRIMS(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 무역관련 투자조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무역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규제나 인센티브제공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산부품 사용의무, 수출이행 의무, 판매시장 지정, 특정제품 제조, 기업활동제한, 기술이전 의무 등이 있음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유엔무역개발회의)

국제무역 및 관련 경제개발 문제에 관한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고, '원조보다는 무역'이라는 구호아래 무역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남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64.12월 발족된 UN 직속기구, 우리나라는 65.1월 가입하였음.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기존의 GATT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결과 전체를 총괄하여 보다 더 강화된 세계무역질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하여 95.1.1부터 출범한 국제무역기구임.

수출보조(Export subsidies)

정부가 상품 수출자의 수출실적이나 수출조건을 기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재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각종혜택(융자 및 무상지원 등)을 의미한다. 이런 수출보조는 이번 UR협상결과에 따라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농업협정)과 공산품 및 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보조금·상계관세)이 다르게 협상이 종결되었다.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수출유통비용 절감지원, 수출수송비 지원, 수출상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은 감축대상에 해당되도록 했다. 반면, 공산품과 수산물의 경우는 수출연계 및 수입대체성이 있는 정부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s)

이번 UR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라 정부가 재정에서 농업생산자에게 직접지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일명 허용보조)을 농업협정에 규정하였다. 이런 직접지불 보조사업은 생산중립적 소득보조(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등 포함), 탈농지원, 자연재해 구호지원, 휴경지원, 환경보전지원, 구조조정 투자지원, 낙후지역 원조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포괄성 원칙(Principle of comprehension)

'95년 APEC 동경 정상회담에서 다시 대두된 국제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진원칙으로서, 이 포괄성의 원칙은 UR농산물협상과정에서 논의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원칙과 유사한 개념이다. APEC에서는 이 원칙을 APEC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한 추진 목표를 모든 분야에서 예외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APEC의 15개 행동강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은 자국한테 불리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서 이행해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신축성의 원칙(Principle of flexibility)

'95년 APEC 동경 정상회담에서 다시 대두된 국제무역 및 투자자유화 추진원칙으로서, 이 신축성의 원칙은 APEC이 지향해 나가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회원국 정부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기업가 및 무역당사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APEC 각 회원국간에 무역 및 투자가 자유스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자는 원칙을 뜻한다.

뉴 라운드협상(New Round Negotiation)

세계경제에서 점점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R협상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환경과 무역문제, 노동과 무역문제, 공정경쟁과 무역문제 등을 규율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정 틀을 만들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등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통상문제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뜻한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식물종자 보증제도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국제 식물종자보호연맹으로서, 1961년에 조약이 발효되어 1968년부터 보호업무가 개시되었으며, 최근 1991년에 조약을 개정하여 보호제도를 보다 강화시켰다. 현재 회원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2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비회원국이나 조만간에 가입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있다(WTO/지적 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생물 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생물 다양성의 보전(농업 목적용 재래종 포함)과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 및 관련기술의 이전과 이들의 이용으로 인한 수혜를 세계 각국이 공유하며, 자국 관할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엔 주도하의 협약을 뜻한다. 생물 다양성이라 함은 육상, 해상 및 기타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말한다(농업 목적용 재래종의 가축 및 작물종자 류도 포함됨)

농림부는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 1996년 9월 30일

발행처 : 농 립 부

편 집 : 농 립 부 공 보 관 실
(503-7211~2)

인 쇄 :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737-2104)

〈비 매 품〉